

생명인품인품진남

# 전라남도 **도보**

전라남도 도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2023-40호 2023년 8월 3일 (목)

[www.jeonnam.go.kr](http://www.jeonnam.go.kr)

목 차

◇ 조 례

- 전라남도 조례 제5775호                    전라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전라남도 조례 제5776호                    전라남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전라남도 조례 제5777호                    전라남도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전라남도 조례 제5778호                    전라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전라남도 조례 제5779호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전라남도 조례 제5780호                    전라남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전라남도 조례 제5781호                    전라남도의회 이에스지(ESG) 실천 조례
- 전라남도 조례 제5783호                    전라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 전라남도 조례 제5784호                    전라남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 전라남도 조례 제5785호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전라남도 조례 제5786호                    전라남도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 전라남도 조례 제5787호                    전라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전라남도 조례 제5788호                    전라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전라남도 조례 제5789호                    전라남도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육성 및 지원 조례
- 전라남도 조례 제5790호                    전라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전라남도 조례 제5791호                    전라남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전라남도 조례 제5792호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전라남도 조례 제5793호                    전라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전라남도 조례 제5794호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원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전라남도 조례 제5795호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전라남도 조례 제5796호                    전라남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전라남도 조례 제5797호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 전라남도 조례 제5798호                    전라남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전라남도 조례 제5799호                    전라남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 전라남도 조례 제5800호                    전라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
- 전라남도 조례 제5801호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 조례

- 전라남도 조례 제5802호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
- 전라남도 조례 제5803호      전라남도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전라남도 조례 제5804호      전라남도교육청 아침 간편식 지원 조례

◆ **훈 령**

- 전라남도 훈령 제1486호      전라남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일부개정훈령

◆ **고 시**

- 전라남도 고시 제2023-303호      산림사업법인 등록 취소 고시
- 전라남도 고시 제2023-311호      전라남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변경 고시
- 전라남도 고시 제2023-312호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 전라남도 고시 제2023-313호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 고시
- 전라남도 고시 제2023-314호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 고시
- 전라남도 고시 제2023-315호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 고시

◆ **공 고**

- 전라남도 공고 제2023-864호      입법 예고 공고
- 전라남도 공고 제2023-869호      전라남도 화학물질 알권리와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 전라남도 공고 제2023-872호      매장문화재 공고
- 전라남도 공고 제2023-883호      공인 등록 공고

◆ **시군행정**

- 목포시 고시 제2023-123호      목포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목포시 공고 제2023-1339호      목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주민 의견청취 열람 공고
- 여수시 고시 제2023-342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여수시 고시 제2023-347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 여수시 공고 제2023-2161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사전 열람 공고
- 여수시 공고 제2023-2209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 나주시 공고 제2023-1269호      나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공사완료 공고
- 광양시 고시 제2023-238호      광양 도시계획시설(시장 제2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광양시 고시 제2023-239호      광양 도시계획시설(중로 2-185호선)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광양시 고시 제2023-240호	광양 도시계획시설(광장 제3호)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광양시 공고 제2023-1668호	광양 도시계획시설(중로 2-94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곡성군 고시 제2023-102호	곡성 군계획시설(소로1-101)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화순군 고시 제2023-102호	화순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경미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강진군 고시 제2023-73호	사초 오토캠핑장 편익시설 신축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강진군 공고 제2023-697호	군동면 호계리 공동주택 군계획시설(도로)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사전 열람 공고
해남군 고시 제2023-122호	군계획시설결정 실효,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해남군 공고 제2023-1907호	해남군 군계획시설(하수도)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전 열람 공고
함평군 고시 제2023-73호	함평 군관리계획(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및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함평군 고시 제2023-76호	함평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함평군 공고 제2023-923호	함평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공사완료 공고
신안군 공고 제2023-925호	신안 군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 사전 열람 공고

전라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8. 3.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775호

### 전라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웰니스 관광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 사업추진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웰니스 관광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웰니스 관광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관광업무를 담당 하는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

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개의(開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제3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를 말한다)으로 작성·보존해야 한다.

⑦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 회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웰니스 관광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0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웰니스 관광자원, 사업체, 인력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웰니스 관광 사업)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자원(콘텐츠) 개발
2. 웰니스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개선
3.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4.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5. 웰니스 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6.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7. 웰니스 관광 컨설팅·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8.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지원)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전문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웰니스 관광 민관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전라남도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8. 3.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776호

### 전라남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자 발생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를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로,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전라남도민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을 “구할” 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 를 “전라남도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 로 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체험장” 이란 상설 또는 이동 심폐소생술 체험장을 말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심폐소생술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고위험 만성질환자의 가족, 소속 공무원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 을 “(심폐소생술 체험장의 운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이하 “상설교육장” 이라 한다)” 을 “체험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상설교육장” 을 “체험장” 으로,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지식” 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또는 그 밖에 심폐소생술에 관한 전문 지식 및 자격”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과 협의하여 체험장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홍보물, 누리집 등의 매체나 도지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8. 3.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777호

## 전라남도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수거·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환경”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환경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의 뜻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이하 “해양폐기물등”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수거·정화 등의 처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해양폐기물등 수거·정화 민간 참여 방안
2. 해양환경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전문 기관 또는 법인·단체나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폐기물등 발생 예방 및 교육
2. 해양폐기물등 수거·정화 등 처리 활동(수상, 수중, 바닷가)
3. 해양폐기물등 수거·정화 등 처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 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해양폐기물등의 수거·정화 등 처리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및 어촌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8. 3.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778호

전라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본청·의회사무처·직속 기관”을 “본청·직속 기관”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장기근속 공무원, 모범공무원”을 “장기근속 모범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격려금품”을 “기념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직원 문화체험활동비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8. 3.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779호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학 및 평생교육사업”을 “평생교육사업, 지역대학 육성 및 협력사업”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행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역”을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지역의”를 “도내”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고등교육 각급학교를 말한다) 육성 및 협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대학지원사업 예산 집행 및 실적 관리
2. 지역대학, 지역기업(「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등 연계사업 지원
3. 각종 대학 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 관리
4.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조사·분석·평가 등 정책개발 지원
5. 그 밖에 지역대학 육성 및 협력에 필요한 사항

제7조제1호 중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와”를 “도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8. 3.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780호

### 전라남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시행규칙)”을 “(응급의료지원단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3조의6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두는 전라남도 응급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지원단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행계획 수립·변경
2. 응급의료 자원조사
3.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마련 및 개선
4.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 조정
5.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결과 활용
6.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및 개선
7. 그 밖에 전라남도가 수행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지원

③ 지원단장은 보건복지국장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⑤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위탁운영) 도지사는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의료기관·관계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실적 보고) ①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해

당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제20조(지도 및 감독)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원단장에게 지원단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단장은 도지사의 요구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며, 지도·감독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 이에스지(ESG) 실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8. 3.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781호

### 전라남도의회 이에스지(ESG) 실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이에스지(ESG)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평가 요소인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를 말한다.
2. “이에스지(ESG) 실천”이란 전라남도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의회의 운영과 의정활동에 ESG 요소를 반영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이에스지(ESG) 실천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라남도의회 이에스지(ESG) 실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이에스지(ESG) 실천 목표 및 추진 방향
2. 이에스지(ESG) 실천 방안
3. 이에스지(ESG) 실천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4. 이에스지(ESG) 실천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추진) 의장은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실천 홍보 및 교육
2.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평가지표 마련
3. 이에스지(ESG) 실천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4. 그 밖에 이에스지(ESG) 실천 활성화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의장은 이에스지(ESG) 실천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국내외 공공기관이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의장은 이에스지(ESG) 실천 또는 그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전라남도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8. 3.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783호

### 전라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전라남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보건의료 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실습교육 지원
- 2.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 3.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이하 “보건의료인력등”이라 한다)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보건의료인력등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8. 3.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784호

### 전라남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 및 공공건축의 품격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 공공건축의 품격을 제고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건축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전라남도 우수 건축물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건축물을 매년 우수 건축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우수 건축물 선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우수 건축물의 건축주, 설계자 등 관계자에게 전라남도 우수 건축물 시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우수 건축물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도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라 의뢰받은 건축기획 업무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재검토 업무
3.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업무
4. 시·군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사 5명 이상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도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8. 3.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785호

###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정적 지원이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사업

제7조의2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통 관련 분야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0조제1항 중 “실시할 수 있다”를 “격년으로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8. 3.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786호

### 전라남도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와 수생태계의 보전·관리, 가뭄·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 물관리”란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물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3조와 「물환경보전법」 제2조 및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물관리의 기본원칙) 통합 물관리는 법 제8조부터 제19조까지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후위기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물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물환경을 적정하게 보전·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를 통해 전라남도민이 사용 목적에 적합한 수질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물관리기술의 발전과 물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법 제28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 및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고려하여 10년마다 전라남도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관리 목표와 기본방향

- 2.물관리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 및 물 공급
4. 가뭄·홍수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방
5. 빗물 관리 및 물의 재이용 촉진
6. 지하수의 보전·관리 및 적절한 개발·이용
7. 불투수면 증가에 따른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 개발
8. 수생태계의 보전·관리 및 수질 개선
9. 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
10. 물관리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11. 그 밖에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전라남도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도지사는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수립한 물관리 관련 계획이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물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본계획의 이행 평가
3. 기본계획과 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 여부
4. 그 밖에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 물관리, 하천관리, 농업용수 업무 담당 실장·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물관리, 물환경 보전 관련 기관의 임직원
3. 물관리, 물환경 보전, 물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통합 물관리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경미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물문화 및 물산업의 육성) ① 도지사는 물순환 및 물관리 등 물에 관한 전라남도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포함한 물문화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물의 날, 물 주간에 물에 관한 관심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물관리기술 개발의 촉진과 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연구 기관이나 물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통합 물관리 사업의 추진 등) ① 도지사는 통합 물관리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기술 개발, 수질 개선, 수생태계 복원, 물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물관리 협약) 도지사는 통합 물관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관련 기관·단체와 물의 이용·배분, 물환경의 보전·관리, 가뭄·홍수로 인한 재해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물관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6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물관리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7조(제안의 모집) ① 도지사는 통합 물관리에 관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모에 채택된 제안자에게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및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8. 3.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787호

### 전라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전라남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 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방연마스크를 말한다.

1.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인증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인증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설립된 지방공기업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화재발생 시 방연마스크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이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8. 3.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788호

### 전라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고 전라남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전라남도(이하 “도” 이라 한다)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진정성, 완전성을 지닌 자산인 세계유산을 보호하고 그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히 활용하여 미래세대에 양호한 상태로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도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우수한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이 세계유산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사업 등) 도지사는 도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내 세계유산과 잠정목록(이하 “세계유산 등” 이라 한다) 등에 대한 학술연구 및 실태조사
2. 도내 세계유산 등을 활용한 교육·홍보 및 도민의 인식개선 사업
3. 도내 세계유산 등에 대한 구술사(口述史)·생활문화자료 등의 구축·활용
4.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대상 문화유산 발굴 및 조사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세계유산보존협회의 구성·운영)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세계유산별로 전라남도 세계유산보존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추진단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등재 추진 중인 유산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세계유산 추진단(출연기관·법인 등)(이하 “추진단” 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 등재 신청과 관련 준비
2.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의 보존, 관리,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추진단의 설치·운영을 관련 전문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계유산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도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다른 국가, 세계유산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원 파견) 도지사는 등재 및 보존·관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단체·기관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전라남도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8. 3.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789호

### 전라남도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강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강산업”이란 철을 함유하는 철광석 등을 녹여 쇳물을 만들고 불순물을 줄인 후 가공 과정을 거쳐 후판, 철근, 강관 등의 철강재를 만들어 자동차, 조선, 기계, 건설을 비롯한 전 산업에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철강기업”이란 철강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철강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철강산업의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철강산업의 정책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 ① 도지사는 철강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 철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철강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전망
3. 탄소중립 등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4. 협력체계 구축
5. 철강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철강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철강산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철강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철강산업의 육성·지원) ① 도지사는 철강산업 육성을 위하여 철강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개발
2. 산학연 공동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3.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
4.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철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자문을 위해 전라남도 철강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철강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철강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자문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 철강산업 관련 업무 실장·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철강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철강산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가 제8조에 따른 자문사항을 심의·의결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철강산업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철강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의 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철강산업 관련 정보교환·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8. 3.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790호

### 전라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미 지급한 수당은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제94조제1항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④ 의원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행위로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한다. 이 경우 이미 지급한 수당은 감액분을 환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8. 3.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791호

### 전라남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전라남도의회 의원”을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를 제10조로 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의장은 업무추진비를 부당사용한 의원에 대해 환수,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8. 3.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792호

###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원회 등”을 “위원회등”으로, “규정함으로써 의원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의원의 의정활동에 이바지하는”을 “규정하여 의원 연구활동 활성화를 통해 의정활동에 기여하는”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되는”을 “사용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의원 연구단체”라 한다)란 의원”을 “의원 연구단체”란 전라남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특정분야”를 “특정 분야”로, “구성되어 등록된”을 “구성하여 등록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위원회등”이란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교섭단체 등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이란 의원 연구단체가 입법 및 정책 개발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시행하는 연구용역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단체와 위원회의 연구활동”을 “연구활동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정책연구·개발”을 “정책 연구·개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그 밖의 의장”을 “그 밖에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의원 연구단체 활동비 지원)”을 “(연구활동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연구단체에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연구단체와 위원회등에”로, “각 연구단체에 연구활동”을 “연구활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연구활동”으로, “결과에 대한 평가”를 “결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연구용역비 지원)”을 “(정책연구용역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연구단체와 위원회”를 “연구단체”로, “정책연구활동에 필요한 정책연구용역비를”을 “정책연구용역에 필요한 비용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 “제4조에 따른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으려면” 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의” 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구단체와 위원회는 연구활동에 필요한” 을 “연구단체는 제5조에 따른” 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을 “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연구단체와 위원회” 를 “연구단체” 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9조제3항” 을 “제9조제4항” 으로, “단체” 를 “의원 연구단체” 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위원회의” 를 “위원회등의” 로, “통지 된 후에 하여야” 를 “통지된 후에”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는” 을 “위원회등은” 으로, “정책연구” 를 “정책 연구” 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를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연구단체와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 종료” 를 “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 완료” 로, “이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최종 성과품 및” 을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최종 성과품을 포함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으로 한다.

③ 의원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예산 사용 내역서를 포함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위원회는” 을 “위원회등은” 으로, “기타” 를 “그 밖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와 위원회등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의원이 의원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를 “의원 연구단체를 등록하려면”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의원의 변동이 있는” 을 “의원이 변동된” 으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를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1개 의원 연구단체에는 같은 상임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는 제외한다) 소속 의원이 5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원 연구단체로 등록된 후 원구성 등으로 소속 상임위원회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된 해에 전반기 원구성 이후 의원 연구단체를 등록하려면 같은 해 8월 15일까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 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등록취소)” 를 “(등록 취소)”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 제반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며,” 를 “등에 필요한” 으로, “사항을 심의한다” 를 “사항은 전라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회운영위원장은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을 “전라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회운영 위원장은 의원 연구단체 활동계획 심의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를 “전라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지원 심의결과를 작성하여” 로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라남도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②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하고, 제13조를 제14조로 하며,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연구기관 선정)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의 선정은 공모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14조(중전의 제13조) 본문 중 “연구단체 및 위원회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또는 용역” 을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정책연구용역” 으로, “누리집 등을 통하여” 를 “누리집에” 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사항은 그렇지 아니한다” 를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기관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연구기관 선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중전의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
연구 내용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활동 기간		~ ( 개월)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붙임) * 정책토론, 세미나 등
연구 활동비	총 액	금 원
	산출내역	(붙임: 구체적으로 기술)
결과물 활용계획		

년 월 일

[제출인]

대표 ○○○ (인)

전라남도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년도 정책연구용역 계획서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용역명	
용역목적 및 필요성	
용역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역기간:</li> <li>○ 용역비:</li> <li>○ 추진방법: 공개경쟁 또는 수의계약</li> </ul>
용역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ul> (붙임) * 연구용역, 세미나 등
유사 용역사례	최근 5년간
성과물 활용계획	

년 월 일

[제출인] 대표 ○ ○ ○ (인)

전라남도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정책연구용역 계획 변경신청서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계획 변경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
연구 내용	당 초	연구 주제	
		연구 목적	
	변 경	연구 주제	
		연구 목적	
연구용역 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			(붙임: 구체적으로 기술)
연구용역비	총 액	금	원
	산출내역		
특기사항			

년 월 일

[제출인] 대표 ○ ○ ○ (인)

전라남도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
연구 주제		
연구 활동비	집행액	금 천원
	내 용	
	집행내역	
활용실적(계획)		

- 붙임 1.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1부.
- 2. 예산 사용 내역서 1부.

년 월 일

[제출인] 대표 ○ ○ ○ (인)

전라남도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정책연구용역 활용계획서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활용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00개월)	사업비	천원
목적	○ ○		
활용계획	○ ○		
추진일정 및 방법	○ ○		
기대효과	○ ○		

붙임 정책연구용역 최종 성과품 1부.

년 월 일

[제출인] 대표 ○ ○ ○ (인)

전라남도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년도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년도 의원 연구단체를 다음과 같이 등록 신청합니다.

- 1. 단체의 명칭: ○○○○○○
- 2. 대표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상임위원회	비 고

- 3. 회원 인적사항

성 명	소속 상임위원회	본인 확인	비 고

붙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 (인)

전라남도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변동사항 통보서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의 의원 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단체의 명칭: ○○○○○○

변동사항

구분	당 초		변 경		
	성명	소속 상임위원회	성명	소속 상임위원회	변동일자
대 표					
회 원 (의 원)					

년 월 일

[통보인] 대표 ○○○ (인)

전라남도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연구활동 지원 심의결과 통보서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연구단체명		○○○○○
대표자		
심의 결과	심의 내용	
	연구 활동비	

년 월 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 ○ (인)

전라남도의회 의장 귀하

전라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8. 3.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793호

### 전라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의장” 을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른 겸직신고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 확인을 위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징계)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른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1. 품위유지 위반
2. 청렴의무 위반
3. 겸직신고 위반
4. 영리행위 제한 위반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징계기준(제18조 관련)

구 분	징계사유	적용기준
1. 품위유지	가. 음주운전, 폭행,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비위행위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의원,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2. 청렴의무	가. 직무와 관련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는 행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나. 직무와 관련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고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3. 검직신고	가. 검직신고 불이행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나. 검직 사임권고 불이행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4. 영리행위 제한	가.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제한사항 위반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8. 3.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조례 제5794호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8. 3.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전라남도 조례 제5795호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389명” 을 “5,391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419명” 을 “421명” 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단위:명)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각급학교 (공립)
총 계	5,391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특정직 계	421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48		26	22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373				
일반직 계	4,965				
3급	5		5		
4급	27	1	26		
5급 이하	4,885				
지방전문경력관	30				
지방연구사	18				
별정직·일반직 계	4				
5급 상당 이하	4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8. 3.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전라남도 조례 제5796호

**전라남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국장” 을 “환경교육 업무 담당 국장”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8. 3.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전라남도 조례 제5797호

###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 교육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생의 기본적 학습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의 초등교육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을 말한다.
2. “바우처카드”란 바우처를 지원하는 포인트 충전식 전자 카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학생의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학생교육수당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위해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대응투자 유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교육수당을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학생교육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학생교육수당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생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지급 기준일 현재 전라남도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교육수당의 1인당 지급 한도액은 월 10만원으로 하되, 도시와 농어촌 간 균형 유지를 위해 지역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학생교육수당의 지급 신청) 학생교육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 대리인 등은 교육감이 정한 신청서에 지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보호자 등 신청 정보를 변경하려는 경우 또한 같다.

제6조(학생교육수당의 지급 결정) ① 제5조에 따라 지급 신청 서류를 접수한 학교장은 보호자 등의 자격 여부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교육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최종 검토·확인하고 학생교육수당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제7조(학생교육수당의 지급 방법)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라 학생교육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학생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보호자에게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학생이 성인인 경우에는 학생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접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보호자에게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학생교육수당은 바우처카드로 지급하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인 학생이 직접 지급 대상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화폐 등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학생교육수당의 지급 정지)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교육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학생이 유예 등의 사유로 정원 외로 관리되는 경우
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학생교육수당의 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교육수당을 환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교육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
2. 제8조에 따른 지급 정지 기간에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학생교육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10조(실태조사) 교육감은 학생교육수당 지급 정책에 대한 만족도·효과성 평가 및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전문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학생교육수당의 지급액, 지급 신청 절차, 지급 기준일 및 사용처, 그 밖에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8. 3.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전라남도 조례 제5798호

### 전라남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남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를 “전라남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난독증” 을 “난독” 으로, “학생” 을 “학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독 학생” 으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독” 이란 음소인식 능력 부족 등 다양한 사유로 글자를 읽거나 쓰는 데 어려움이 있는 현상을 말한다.
2. “난독 학생” 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며 난독을 겪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 중 “난독증” 을 “난독” 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기본계획 수립)” 을 “(지원계획 수립)” 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감은 난독 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난독 학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한다.

제4조제3호 중 “난독증” 을 “난독” 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5조로 한다.

제6조(중전의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중전의 제5조) 제1호 및 제2호 중 “난독증” 을 각각 “난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중전의 제4호) 중 “난독증” 을 “난독” 으로 한다.

3. 난독 학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5조(중전의 제6조)의 제목 “(진단 검사)” 를 “(실태조사 및 진단 검사)”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난독증 학생을 판별하기 위하여 진단검사” 를 “난독 학생을 선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난독 학생으로 의심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그 결과를 학부모와 상담하고, 전문기관에 진단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검사를 의뢰할 때에는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중 “단위학교 교사가 난독증” 을 “학교 교사가 난독” 으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감은 난독 학생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치료·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난독 전문 치료 기관 및 단체,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8. 3.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전라남도 조례 제5799호

### 전라남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특수학급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의 설치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교육장 및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특수학급 설치 지원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특수학급 설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 진흥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지원체계 구축
3. 예산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특수학급 설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특수학급 시설 기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수학급이 설치되는 학교에 66제곱미터 이상의 여유교실이나 공간이 없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 학교에 지원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8. 3.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전라남도 조례 제5800호

### 전라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에게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2. “동물학대”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①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교육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인성교육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동물학대 예방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 2. 동물학대 예방교육 활성화 방안
-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의 실시)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게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학교에서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8. 3.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전라남도 조례 제5801호

###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다문화학생의 이중언어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문화학생의 언어능력과 자긍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학생”이란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2. “부모 언어”란 다문화학생 부 또는 모의 모국어를 말한다.
3. “이중언어 교육”이란 다문화학생에게 한국어와 부모 언어를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학생에게 이중언어를 체계적·전문적으로 교육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다문화교육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이중언어 교육 사업
3. 교육 전문성 확보 방안
4. 그 밖에 이중언어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이중언어 교육 사업) ① 교육감은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업은 다문화학생이 아닌 학생도 참여할 수 있다.

1. 이중언어 교육 동아리 운영
2.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3. 부모 언어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담직원) 교육감은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중언어 교육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8. 3.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전라남도 조례 제5802호

###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 언어순화운동을 권장하여 언어폭력 예방과 올바른 언어 습관 형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언어순화운동은 일상생활에서 학생들이 순화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언어순화운동은 학생과 교직원이 욕설, 비난, 차별화 등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습관화하도록 권장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언어순화운동”이란 규범에 어긋난 말과 비속한 말을 올바른 말로 바로잡고, 외국어나 일본식 외래어를 가능한 한 우리말로 바꾸어 쓰는 운동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언어순화운동을 효과적으로 권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언어순화 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3. 학교 지원 방안
4. 그 밖에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전라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인성교육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천사항) ① 학생은 학교와 가정, 사이버 공간 등 일상생활에서 서로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② 교직원은 교직원 및 학생에게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언어순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천 운동을 학생과 교직원에게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캠페인 등)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언어순화운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캠페인, 교내 행사,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8. 3.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전라남도 조례 제5803호

**전라남도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셋” 을 “둘”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라남도교육청 아침 간편식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8. 3.

전라남도교육감 김대중

전라남도 조례 제5804호

전라남도교육청 아침 간편식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에게 아침 간편식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건강 증진과 학습 능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2. “아침 간편식”이란 정규 수업 전에 학생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아침 간편식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아침 간편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2. 지원 사업
- 3.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
- 4.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
- 5. 그 밖에 아침 간편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운영 등) ① 학교의 장은 정규 수업 전에 실시하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간편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아침 간편식 지원을 신청한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 교육감은 아침 간편식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 8. 3.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 훈령 제1486호

### 전라남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일부개정훈령

전라남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라남도지사가 전라남도” 를 “전라남도” 로, “직무” 를 “그 직무” 로, “행한 경우에 고발대상의 범위, 고발시기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 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라 함은 도” 를 “이란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 로, “사업소, 출장소(사업본부 포함)” 를 “사업본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수” 란 본인 및 가족(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이 금품을 요구하거나 제공 받기로 약속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중 “전라남도” 를 “도 본청 및 소속기관의” 로 한다.

제4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을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으로,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를 “사법기관에 고발해야” 로 한다.

① 도 본청 및 소속기관의 부서의 장과 감사·조사 업무담당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감사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감사관은 이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를 “범죄의 경중과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로, “처리하여야” 를 “판단해야”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목” 을 “각 목” 으로, “고발하여야” 를 “고발해야” 로 하며,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200만원” 을 “100만원” 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3,000만원” 을 “200만원” 으로 하며,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비위” 를 “비위(非違)” 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위·변조” 를 “위조·변조” 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고발하여야” 를 “고발해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고발장(별지 제1호 서식)” 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고발장” 으로, “제출하여야” 를 “제출해야” 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범죄혐의자가” 를 “범죄혐의자의” 로, “구두로” 를 “말로” 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고발처리상황(별지 제2호 서식)을 문서로 유지·관리 하여야” 를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유지 관리하고,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않은 사유를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관리해야” 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 중 “아니하고” 를 “않고” 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 을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으로, “보아” 를 “보고” 로, “하여야” 를 “해야” 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고시 제2023-303호

**산림사업법인 등록 취소 고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취소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8. 3.

전라남도지사

법 인 명	대표자	산림사업의 종 류	등록번호	소재지	등 록 취소일자	등록취소 사 유
(유)연암그린텍	이*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전남2009-009	전남 강진군	' 23. 7. 28.	3회 이상 영업정지

전라남도 고시 제2023-311호

전라남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변경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목포시 용당3지구 등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변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2023. 8. 3.

전라남도지사

- 1. 사업명: 전라남도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및 사업지구 지정·변경
- 2. 대상사업: 20개 시·군 113개 지구(지정 111, 변경 2)

□ 2022년 사업지구 (변경)

사업시행자	사업명	사업위치	필지수(필)	면적(m <sup>2</sup> )
2개 군	합 계	2개 지구	503 ⇒ 596	264,593 ⇒ 327,080
담양군수	덕성	금성면 덕성리 일원	406 ⇒ 475	182,221 ⇒ 226,121
보성군수	조성신월1	조성면 신월리 일원	97 ⇒ 121	82,372 ⇒ 100,959

□ 2022년 사업지구 (지정)

사업시행자	사업명	사업위치	필지수(필)	면적(m <sup>2</sup> )
3개 군	합 계	11개 지구	3,956	2,923,624.0
영암군수	7개 지구	소계	3,212	2,520,793.0
	덕진영등	덕진면 영등리 일원	1,017	978,671.0
	덕진장선	덕진면 장선리 일원	282	134,823.0
	신북갈곡	신북면 갈곡리 일원	524	252,558.0
	신북양계	신북면 양계리 일원	715	552,423.0
	시종만수	시종면 만수리 일원	225	321,916.0
	시종옥야2	시종면 옥야리 일원	169	135,789.0
	도포영호2	도포면 영호리 일원	280	144,613.0
무안군수	1개 지구	소계	21	20,635.0
	장재항어촌뉴딜	망운면 목서리 일원	21	20,635.0

사업시행자	사업명	사업위치	필지수(필)	면적(m <sup>2</sup> )
완도군수	3개 지구	소계	723	382,196.0
	불목4	군외면 불목리 일원	146	116,644.0
	황진7	군외면 황진리 일원	354	212,716.0
	장용4	약산면 장용리 일원	223	52,836.0

□ 2023년 사업지구 (지정)

사업시행자	사업명	사업위치	필지수(필)	면적(m <sup>2</sup> )
20개 시·군	합 계	100개 지구	46,344	28,549,388.7
목포시장	1개 지구	소계	1,014	228,418.4
	용당3	용당동 일원	1,014	228,418.4
여수시장	4개 지구	소계	4,034	1,644,389.9
	군내	돌산읍 군내리 일원	1,353	485,208.9
	금성	돌산읍 금성리 일원	863	385,860.0
	죽포	돌산읍 죽포리 일원	989	311,524.0
	상암	상암동 일원	829	461,797.0
순천시장	5개 지구	소계	4,071	2,411,915.0
	월등2	월등면 월등리 일원	635	414,970.0
	낙안2	낙안면 서내리 일원	914	530,785.0
	황전2	황전면 죽청리 일원	648	371,709.0
	황전3	황전면 황학리 일원	935	500,516.0
	황전4	황전면 회룡리 일원	939	593,935.0
나주시장	15개 지구	소계	3,663	1,755,410.0
	대도1	문평면 대도리 일원	140	57,421.0
	안곡1	문평면 안곡리 일원	157	69,411.0
	국동1	문평면 국동리 일원	86	62,257.0
	학동1	문평면 학동리 일원	202	84,890.0
	송산1	문평면 송산리 일원	98	45,507.0
	산호1	문평면 산호리 일원	219	83,759.0
	학교1	문평면 학교리 일원	222	115,814.0
	옥당1	문평면 옥당리 일원	699	332,656.0
	송학1	다도면 송학리 일원	230	72,200.0
	도동1	다도면 도동리 일원	234	102,777.0

사업시행자	사업명	사업위치	필지수(필)	면적(m <sup>2</sup> )
	임정1	다도면 임정리 일원	541	296,691.0
	판촌1	다도면 판촌리 일원	150	40,822.0
	덕동1	다도면 덕동리 일원	246	141,593.0
	오정1	노안면 오정리 일원	114	61,268.0
	철천1	봉황면 철천리 일원	325	188,344.0
담양군수	5개 지구	소계	3,907	1,911,468.5
	금월	담양읍 금월리 일원	429	218,234.8
	대추	봉산면 대추리 일원	816	464,081.0
	창평	창평면 창평리 일원	1,350	534,625.2
	대흥	수북면 대흥리 일원	498	210,316.2
	대치	대전면 대치리 일원	814	484,211.3
곡성군수	4개 지구	소계	1,000	497,087.0
	곡성장선	곡성읍 장선리 일원	231	72,137.0
	죽곡하한	죽곡면 하한리 일원	140	130,890.0
	겸면남양	겸면 남양리 일원	310	153,757.0
	오산기곡	오산면 기곡리 일원	319	140,303.0
구례군수	2개 지구	소계	1,758	873,636.0
	광의대전	광의면 대전리 일원	802	437,687.4
	토지구산	토지면 구산리 일원	956	435,948.8
고흥군수	6개 지구	소계	4,804	3,053,328.0
	풍양고옥1	풍양면 고옥리 일원	2,086	1,016,657.0
	금산신전1	금산면 신전리 일원	645	593,235.0
	도화봉산1	도화면 봉산리 일원	719	569,320.0
	도화지죽1	도화면 지죽리 일원	614	449,519.0
	동강노동1	동강면 노동리 일원	215	129,687.0
	두원예회1	두원면 예회리 일원	525	294,910.0
보성군수	8개 지구	소계	2,000	1,254,506.0
	겸백석호1	겸백면 석호리 일원	481	391,696.0
	노동학동1	노동면 학동리 일원	47	19,408.0
	노동학동2	노동면 학동리 일원	162	129,884.0
	득량송곡1	득량면 송곡리 일원	132	48,005.0
	득량오봉2	득량면 오봉리 일원	610	304,206.0
	회천동울1	회천면 동울리 일원	177	110,081.0

사업시행자	사업명	사업위치	필지수(필)	면적(m <sup>2</sup> )
	회천등울2	회천면 등울리 일원	116	46,346.0
	회천울포1	회천면 울포리 일원	275	204,880.0
회순군수	5개 지구	소계	1,266	541,082.0
	오류1	이양면 오류리 일원	411	175,325.0
	쌍봉	이양면 쌍봉리 일원	309	79,089.0
	호암1	도암면 호암리 일원	62	26,692.0
	원화1	도곡면 원화리 일원	307	201,833.0
	복암2	동면 복암리 일원	177	58,143.0
장흥군수	2개 지구	소계	1,019	503,931.0
	장흥덕제	장흥읍 덕제리 일원	355	160,249.0
	대덕연지	대덕읍 연지리 일원	664	343,682.0
강진군수	9개 지구	소계	1,834	781,856.0
	봉양노해	신전면 수양리 일원	178	95,971.0
	백용	신전면 용월리 일원	58	26,319.0
	논정	신전면 벌정리 일원	254	115,823.0
	대벌	신전면 벌정리 일원	161	61,181.0
	사초	신전면 사초리 일원	344	131,782.6
	송천	신전면 송천리 일원	248	103,964.0
	백화	신전면 옹화리 일원	176	69,031.0
	신전용정	신전면 옹화리 일원	177	94,676.0
	어관	신전면 영관리 일원	238	83,108.0
해남군수	7개 지구	소계	2,584	2,975,072.0
	학동	해남읍 구교리 일원	598	986,765.0
	구성	화산면 평호리 일원	344	487,244.0
	연곡	화산면 연곡리 일원	289	186,230.0
	신흥	화산면 금풍리 일원	140	70,660.0
	장등	현산면 백포리 일원	470	501,985.0
	두모	현산면 백포리 일원	264	314,356.0
	징의	황산면 한자리 일원	479	427,832.0
영암군수	3개 지구	소계	2,002	1,167,130.0
	시종신흥	시종면 시흥리 일원	954	599,932.0
	군서양장	군서면 양장리 일원	482	231,577.0
	군서모정	군서면 모정리 일원	566	335,621.0

사업시행자	사업명	사업위치	필지수(필)	면적(㎡)
무안군수	4개 지구	소계	5,019	4,715,354.0
	몽탄다산	몽탄면 다산리 일원	561	354,727.0
	현경동산2	현경면 동산리 일원	1,398	1,462,526.0
	해제유월1	해제면 유월리 일원	157	148,946.0
	운남동암1	운남면 동암리 일원	2,903	2,749,155.0
함평군수	3개 지구	소계	1,408	973,527.0
	산남	손불면 산남리 일원	816	641,969.0
	보여	신광면 보여리 일원	360	223,805.0
	원산	신광면 원산리 일원	232	107,753.0
영광군수	2개 지구	소계	2,000	1,427,083.0
	군서남죽1	군서면 남죽리 일원	1,569	1,082,172.0
	영광월평1	영광읍 월평리 일원	431	344,911.0
장성군수	2개 지구	소계	640	373,448.0
	삼서소룡2	삼서면 소룡리 일원	269	173,615.0
	북이신평	북이면 신평리 일원	371	199,833.0
완도군수	4개 지구	소계	821	556,923.6
	세동4	고금면 세동리 일원	21	13,881.0
	중도4	완도읍 중도리 일원	345	188,494.6
	영풍3	군외면 영풍리 일원	426	198,973.0
	부항4	보길면 부항리 일원	29	155,575.0
진도군수	9개 지구	소계	1,500	903,823.5
	쌍정2	진도읍 동외리 일원	177	73,251.9
	월평	진도읍 수역리 일원	98	129,031.3
	내동산	군내면 분토리 일원	116	56,352.0
	선항	임회면 삼막리 일원	223	99,707.0
	중매	임회면 고정리 일원	174	126,366.0
	대앵무	지산면 앵무리 일원	176	133,829.0
	고야	지산면 고야리 일원	339	181,157.3
	외삼당	지산면 삼당리 일원	138	74,925.0
	세방	지산면 가학리 일원	59	29,204.0

3. 지정 일: 2023. 7. 26.(수)
4. 지정목적: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 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도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5. 관 리 청: 전라남도(토지관리과)
6. 토지조서: 도보게재 생략(전라남도 및 해당 시·군청에 비치)
7. 지정도면: 도보게재 생략(전라남도 및 해당 시·군청에 비치)
8. 열람 부서
  - 가.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전화 061-286-7651, FAX 061-286-4812)
  - 나. 시·군 담당부서
    - 목포시청 민원봉사실 ☎ 061-270-8118, FAX 061-270-3455
    -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 061-659-3331, FAX 061-659-5913
    - 순천시청 토지정보과 ☎ 061-749-5878, FAX 061-749-4660
    - 나주시청 시민봉사과 ☎ 061-339-7822, FAX 061-339-2815
    - 담양군청 민원과 ☎ 061-380-3267, FAX 061-380-3585
    - 곡성군청 민원실 ☎ 061-360-2661, FAX 061-360-2607
    - 구례군청 종합민원과 ☎ 061-780-2263, FAX 061-780-2650
    - 고흥군청 종합민원실 ☎ 061-830-5674, FAX 061-830-5576
    - 보성군청 종합민원과 ☎ 061-850-5274, FAX 061-850-8507
    - 화순군청 행복민원과 ☎ 061-379-3451, FAX 061-379-3500
    - 장흥군청 행복민원과 ☎ 061-860-5645, FAX 061-860-6865
    - 강진군청 민원봉사과 ☎ 061-430-3792, FAX 061-430-3429
    - 해남군청 민원토지과 ☎ 061-530-5626, FAX 061-530-5576
    - 영암군청 민원소통과 ☎ 061-470-2520, FAX 061-470-2721
    - 무안군청 민원지적과 ☎ 061-450-5417, FAX 061-453-3001
    - 함평군청 민원봉사과 ☎ 061-320-1662, FAX 061-320-3456
    -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 061-350-5254, FAX 061-350-5597
    -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 061-390-7480, FAX 061-390-7650
    - 완도군청 민원봉사과 ☎ 061-550-5344, FAX 061-550-5347
    - 진도군청 민원봉사과 ☎ 061-540-3622, FAX 061-540-3693
  - 다. 의견 제출 방법 :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유선, 방문 등
9. 기 타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전라남도 고시 제2023-312호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8. 3.

전라남도지사

대상 시설물			해제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승주다목적회관	전라남도 순천시 승평동길 70	순천시청	철거 예정 ('23. 12.)	철거시까지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창평전통시장	전라남도 담양군 사동길 14-25	담양군청	화재에 따른 철거	철거에 따른 안전관리 불필요	
아동교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불무동 1길 1	구례군청	교량 재가설에 따른 철거	철거에 따른 안전관리 불필요	

전라남도 고시 제2023-313호

##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23-280호(2023.07.06.)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한 여수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합니다.

2023. 8. 3.

### 전라남도지사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가. 명 칭 : 여수국가산업단지
  - 나.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삼일동의 4개동 및 일부 해면
  - 다. 면 적 : 51,228,685㎡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종합화학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용지, 주거지역 및 관련시설을 계획적이며 효율적으로 정비할 구역을 설정한 기존 산업단지지정 목적을 유지하면서, 공해 및 산업 재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이 쾌적한 장소로 이주시키고, 이전 적지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연관단지로 활용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유도하기 위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계재생략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 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기간(변경없음) : 1967년 ~ 2027년
  - 나.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방법(변경없음) : 공영개발 또는 실수요자 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변경없음) : 계재생략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 계재생략
    - 1) 중흥·삼동지구(변경없음) : 계재생략
  -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 1) 교통계획(변경없음) : 계재 생략
    - 2) 공업용수계획(기존단지 및 확장단지 : 변경없음) : 계재 생략
    - 3) 폐수처리시설계획(변경없음) : 계재 생략
    - 4) 폐기물처리장 시설계획(변경)

□ 폐기물발생량(변경)

구분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ton/일)		지정폐기물 (ton/일)	합 계 (ton/일)
	가연성	불연성		
계	2,183.23	2,222.97	732.64	5,138.84
소각	816.32	-	249.29	1,065.61
매립	356.92	315.37	13.70	685.99
재활용	1,009.99	1,907.60	469.65	3,387.24

□ 폐기물시설(변경)

구 분			처리용량			면적(m <sup>2</sup> )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폐기 1	대로1-6과 중로2-1 국지도로 좌측	매립시설	96,585.8m <sup>2</sup>	-	96,585.8m <sup>2</sup>	29,882.7	-	29,882.7	사업장일반 및 지정폐기물 (KC환경)
		소각시설	-	증)84.0톤/일	84.0톤/일				
폐기 2	여수시 월내동 134번지 일원		1,500,000m <sup>2</sup>	-	1,500,000m <sup>2</sup>	154,726	-	154,726	사업장일반 및 지정폐기물 (여수시매립장)
	여수시 월내동 252번지 일원	기타처리	290m <sup>2</sup> /일	감)290m <sup>2</sup> /일	-	21,736	감)1,856	19,880	사업장일반 및 지정폐기물 (와이엔텍)
		소각시설	-	증)266.4톤/일	266.4톤/일				
	여수시 월내동 산69번지 일원		661,136m <sup>2</sup>	-	661,136m <sup>2</sup>	42,471	-	42,471	사업장일반 폐기물 (여수환경산업)
	여수시 월내동 산130번지 일원	사업장 일반폐기물	1,223,544m <sup>2</sup>	-	1,223,544m <sup>2</sup>	52,714	-	52,714	사업장일반 및 지정폐기물 (와이엔텍)
		지정 폐기물	196,694m <sup>2</sup>	-	196,694m <sup>2</sup>	14,319	-	14,319	
		계	1,420,238m <sup>2</sup>	-	1,420,238m <sup>2</sup>	67,033	-	67,033	
여수시 월내동 1402번지 일원		98.8톤/일	-	98.8톤/일	16,914	-	16,914	사업장일반 및 지정폐기물 (KC환경)	
폐기 2	여수시 월내동 산133번지 일원	소각시설	100톤/일	-	100톤/일	37,698.8	-	37,698.8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처리 시설(여수시)
		재활용 처리시설	100톤/일	-	100톤/일				
		음식물 처리시설	60톤/일	-	60톤/일				
		폐수 처리시설	55톤/일	-	55톤/일				
		계	315톤/일	-	315톤/일				

구 분		처리용량			면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여수시 낙포동 863번지 일원	60톤/일	감)60톤/일	-	5,974	감)5,974	-	사업장일반 및 지정폐기물 (아띠)	
	여수시 월내동 1403번지	160,000㎡	-	160,000㎡	16,959.7	-	16,959.7	사업장 일반 및 지정폐기물 (GS칼텍스)	
	여수시 월내동 428-1번지일원	242,270㎡	-	242,270㎡	47,094	-	47,094	사업장 일반 및 지정폐기물 (GS칼텍스)	
	여수시 월내동 산73번지 일원	270,910㎡	-	270,910㎡	26,107	-	26,107	사업장일반 폐기물 (여수환경산업)	
	여수시 월내동 산106-1번지 일원	1,700,000㎡	-	1,700,000㎡	72,138	-	72,138	사업장 일반 및 지정폐기물 (와이엔텍)	
폐기 3	여수시 중흥동 750-2번지	62톤/일	-	변경없음	24,409	-	24,409	사업장일반 폐기물 (미래환경 에너지)	
	여수시 낙포동 380번지 일원	253㎡/일	감)253㎡/일 증)732,728㎡	732,728㎡	90,809	감)41,851.3	48,957.7	사업장일반 및 지정폐기물 (와이엔텍)	
	여수시 월내동 산127-1번지 일원	재활용시설 120톤/일	-	120톤/일	24,650	-	24,650	생활폐기물 (삼호환경기술)	
	여수시 화치동 1313	-	증)92.0톤/일	92.0톤/일	-	-	-	사업장 지정폐기물 (한국바스프)	
	여수시 중흥동 759	-	증)30톤/일	30톤/일	-	-	-	사업장 지정폐기물 (LGMMA)	
	여수시 낙포동 854번지	소각시설	-	증)96톤/일	96톤/일	-	증)7,745	7,745	사업장일반 폐기물 (누리환경)
		재활용시설	-	증)200톤/일	200톤/일				

- 5) 공원계획(변경없음) : 게재 생략
- 6) 녹지계획(변경없음) : 게재 생략
- 7) 전력계획(변경없음) : 게재 생략
- 8) 하천시설계획(기존단지 및 확장단지 : 변경없음) : 게재 생략
- 9) 항만계획(변경없음) : 게재 생략

- 10) 철도계획(기존단지 및 확장단지 : 변경없음) : 게재 생략
- 11) 광장(기존단지 : 변경없음) : 게재 생략
- 12) 배수로시설계획(기존단지 : 변경없음) : 게재 생략
- 7. 산업단지개발을 위한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 생략
-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게재 생략
- 9. 관계도서 열람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규정에 의거 관계 도서를 전남도청 투자유치과(061-286-5161)와 여수시청 도시계획과(061-659-401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전라남도 고시 제2023-314호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 고시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를 통한 공중위생 향상 및 공공수역 수질 보전 등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하수도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신안군 신의 상태서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설치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8. 3.

전라남도지사

인가내용

사업의 목적		생활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함	
시설의 명칭		신의 상태서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사업시행자	성명	신안군수	
	주소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사업시행지	위치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면 상태서리 일원	
	면적	78㎡(처리시설 설치면적)	
사업내용		처리시설 85㎡/일(신설), 오수관로 4.332km 설치 등	
처리공법		ECO-SBR 공법	
처리구역 및 배수구역		처리구역	배수구역
		15.0ha	서해
사업시행기간		2023년 ~ 2025년	

※ 관계 도서 열람 장소: 신안군 상하수도사업소(061-240-8196)

전라남도 고시 제2023-315호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 고시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를 통한 공중위생 향상 및 공공수역 수질 보전 등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하수도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신안군 장산 팽진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설치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8. 3.

전라남도지사

인가내용

사업의 목적		생활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함	
시설의 명칭		장산 팽진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사업시행자	성명	신안군수	
	주소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사업시행지	위치	전라남도 신안군 장산면 팽진리 일원	
	면적	82㎡(처리시설 설치면적)	
사업내용		처리시설 65㎡/일(신설), 오수관로 5.418km 설치 등	
처리공법		BRC 공법	
처리구역 및 배수구역		처리구역	배수구역
		14.9ha	서해
사업시행기간		2023년 ~ 2025년	

※ 관계 도서 열람 장소: 신안군 상하수도사업소(061-240-8196)

전라남도 공고 제2023-864호

입법 예고 공고

「전라남도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3.

전라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전라남도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정기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실적이 저조한 식생활교육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비상설화 근거 조항 신설(안 제8조2항)

나. 위원의 임기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9조3항)

4. 입법 예고기간 : 2023. 8. 3. ~ 2023. 8. 23.

5. 「전라남도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다음

6. 의견제출

○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농식품유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 서식

개정(안)	수정(안)	의견(사유)

○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남도청 농식품유통과

- 주 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청 농식품유통과

- 연 락 처 : 전화(061-286-6453), 팩스(061-286-4786)

- 전자우편 : 이메일(foryou9212@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 전화 · 팩스 · 전자우편 등

전라남도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2항) 제1호 중 “추진방향”을 “추진 방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명 또는”을 “임명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식생활교육”을 “식생활 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위원장이나 재적위원”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으로, “소집하며”를 “위원장이 소집하며”로, “경우에”를 “때”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제6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에 위원회”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를 “처리할”로, “두되, 간사는 농식품유통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를 “두고, 간사는 농식품유통과장이 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공고 제2023-869호

전라남도 화학물질 알권리와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화학물질 알권리와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의 일부개정을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8. 3.

전라남도지사

- 1. 자치법규명
  - 「전라남도 화학물질 알권리와 안전관리 조례」
- 2. 개정이유
  -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정비 강화 추진계획에 따라 존속은 필요하나 정기적 운영이 어려운 위원회를 정비 대상 위원회로 선정
  - 조례 개정을 통해 비상설화 위원회로 전환하고, 기존 위원회 위원 해촉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내실화 제고
- 3. 주요내용
  - 위원회 비상설화로 개정, 그 외 자구수정 등
- 4. 입법 예고기간 : 2023. 8. 3. ~ 2023. 8. 23.
- 5. 「전라남도 화학물질 알권리와 안전관리 조례 개정안」 : 다음
- 6. 의견제출
  -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기후대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제출 서식

개정(안)	수정(안)	의견(사유)

- 의견 제출할 곳 : 전라남도청 기후대기과
  - 주 소 : 전남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전라남도청 기후대기과

- 연 락 처 : 전화(061-286-7942), 팩스(061-286-4940)
- 전자우편 : 이메일(kyj95119@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 전화 · 팩스 · 전자우편 등

전라남도 화학물질 알권리와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화학물질 알권리와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늘파악하고” 를 “늘 파악하고” 로, “수립·시행하여야” 를 “수립·시행해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여야 한다” 를 “해야 한다” 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행하여야” 를 “시행해야”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개하여야” 를 “공개해야” 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권고하여야” 를 “권고해야” 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을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회피하여야” 를 “회피해야” 로 한다.

제12조 중 “누설하여서” 를 “누설해서” 로 한다.

제13조 중 “공개하여야” 를 “공개해야” 로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중 “공개하여야” 를 각각 “공개해야” 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화학사고 주민고지)” 를 “(화학사고 주민 고지)” 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공고 제2023-872호

### 매장문화재 공고

1. 관련근거  
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 전라남도 지역에서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고기간 : 2023. 8. 3. ~ 2023. 11. 3.
4. 소유권 주장 관련 자료 제출  
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문화자원과장, 전화 061-286-5326, FAX 061-286-4771)

2023. 8. 3.

전라남도지사

공고 목록

연번	유물명	허가번호	유적명	조사지역	조사기간	조사기관, 보관처
1	호, 병, 대부완, 뚜껑, 피수, 등	2022-1442	영암 마산리 토기요지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마산리 산 33-1	2022-11-14 2022-12-23	(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
2	석축, 석도, 석차, 석부 등	2022-1768	구례 중산천 하천재해 복구사업부지 내 유적	전라남도 구례군 문척면 금정리 1081-11 일원	2022-12-26 2023-02-14	(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
3	관정, 청동손가락, 청동합 등	2022-1759	여수 소재지구 택지개발사업(공원)부지 내 유적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546	2022-12-20 2023-02-07	(재)나라문화연구원
4	웅기류 등	2023-0030	곡성 신기천 하천재해복구사업부지 내 유적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348-1	2023-01-03 2023-03-02	(재)영해문화유산연구원
5	청자편, 분청사기편, 암키와 등	2021-1635	여수 소호동(528번지) 소재지구 택지개발부지 내 유적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동 528	2021-12-01 2022-05-18	(재)나라문화연구원
6	기와류, 자기류 등	2023-0029	화순 개천사 은적암터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기동리 개천사 536	2023-01-25 2023-02-28	(재)동북아지석묘연구소
7	납석제 뚜껑, 천희통보, 인화문 토기편 등	2021-1831	신안 진리 읍동 경로당 신축부지 내 유적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진리 684	2021-12-27 2023-03-06	(재)불교문화재연구소
8	장경호, 유공소호, 철도, 철검 등	2022-0413	나주 월랑리 구양 고분	전라남도 나주시 동강면 월랑리 486-3 일원	2022-07-25 2022-11-15	(재)대한문화재연구원

전라남도 공고 제2023-883호

공인 등록 공고

「전라남도 공인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전라남도관광개발과일상경비출납원인’ 등 4종의 공인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8. 3.

전라남도지사

1. 등록사유 : 전라남도 조직개편(2023. 7. 3일자) 및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기금관리
2. 등록공인 사용일 : 2023. 8. 3.
3. 등록공인 인영명

일련 번호	기 관 명	등록 공인명
1	전라남도(관광개발과)	전라남도관광개발과일상경비출납원인
2	전라남도(기후대기과)	전라남도기후대기과일상경비출납원인
3	전라남도(고향사랑과)	전라남도고향사랑기금운용관인
4		전라남도고향사랑기금분임기금운용관인

4. 등록공인 인영

일련 번호	공 인 명	규격 (cm)	모형	인 영	비고
1	전라남도 관광개발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정방형		
2	전라남도 기후대기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8×18	정방형		
3	전라남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관인	20×20	정방형		

일련 번호	공 인 명	규격 (cm)	모형	인 영	비고
4	전라남도 고향사랑기금 분임기금운용관인	20×20	정방형		

목포시 고시 제2023-123호

**목포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023년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목포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목포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 8. 3.

**목포시장**

1. 목포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 다음
2. 목포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도면 : 게재 생략
3. 도시계획선 분할 측량을 위해 실시계획인가 전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4. 관계 도서는 목포시청 전국체전추진단(061-270-445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목포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1. 공공·문화체육시설

1) 체육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	체육시설	목포시 대양동 산124번지 일원	197,267	감) 1,400	195,867	목포시고시 제2016-94호 (2016.5.26)	
변경	2	체육시설	목포시 대양동 산124번지 일원	195,867	감) 1,052	194,815	목포시고시 제2016-94호 (2016.5.26.)	

2) 체육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형 : 체육시설 선형 변경</li> <li>■ 면적 : (당초) 195,867㎡ (변경) 194,815㎡</li> <li>※ (면적 1,052㎡ 감, 시설면적 5% 미만의 경미한 변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2-20호선/변속차로) 일부가 도시 계획시설(체육시설/종합경기장)에 편입되어 유지 관리를 위해 제척</li> <li>■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 중 경미한 선형 변경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변속차로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 설 변경)</li> </ul>

2.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2	20	30	보조 간선	339	대로3-4	대로2-19	일반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2010-323호 (2010.11.05)	-
변경	대로	2	20	30	보조 간선	339	대로3-4	대로2-19	일반도로	전라남도 고시 제2010-323호 (2010.11.05)	-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 2-20	대로 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적 및 선형(변속차로 반영) 변경 - 10,704㎡ → 11,756㎡, 증) 1,05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 중 경미한 선형 변경</li> <li>■ 목포종합경기장 변속차로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li> </ul>

목포시 공고 제2023-1339호

목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주민 의견청취 열람 공고

목포시 달동 787-35번지 일원 목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과 이해관계자께서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8. 3.

목포시장

1. 주요내용

- 가. 공고명: 목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주민 의견청취 열람-공고
- 나. 목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조서

■ 교통시설(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116	주차장	목포시 달동 787-35번지 일원	1,423	감)1,423	-	목포시 고시 제2020-151호 (2020.05.28.)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16	주차장	□ 폐지 □ 면적 : 1,423㎡	□ 주차장으로 활용중인 부지에 복지회관 건립을 통해 사회복지 수요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주차장을 폐지하고자 함

- 2. 목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도면: 게재 생략
- 3. 열람장소 : 목포시청 해양항만과 / 도시디자인과
- 4.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3. 8. 3. ~ 2023. 8 . 18.(15일간)
- 5.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해양항만과 (☎061-270-8079) 및 도시디자인과(☎061-270-86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고시 제2023-342호

###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고시합니다.

2023. 8. 3.

#### 여수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여수시 신기동 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사업
  - 나. 명 칭: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가. 면적: 6,302.0㎡(도로 4,515.9, 공원 1,786.1)
  - 나. 규모: L=345m, B=11m/L=41m, B=15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주)대국개발 대표 박준수
  -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B동 3층 301호
5. 사업의 기간(변경없음): 2021. 4. 22. ~ 2023. 7. 2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게재생략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새로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여수시로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고시 제2023-347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여수시 고시 제2023-303호(2023. 7. 6.)와 관련, 누락된 사항을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합니다.

2023. 8. 3.

여수시장

1. 사업시행지 위치(변경없음) : 여수시 신월동 19-2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1149)사업
  - 나. 명 칭 : 월호동 주민자치센터 아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 가. 면 적 : 기정) 1,009㎡ → 변경) 1,012㎡
  - 나. 규 모 : L=94m, B=8.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 여수시장
  - 나. 주 소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20. 4. 23. ~ 2023.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다음
7.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 교통시설 결정(변경) 조서
    -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149	6-8	국지 도로	160	중로2-24 신월동 32-1	국동 1075	일반 도로	-	여고-311호 (19.10.24.)	
변경	소로	3	1149	6-8	국지 도로	160	중로2-24 신월동 32-1	국동 1075	일반 도로	-	여고-311호 (19.10.24.)	

##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3-1149	소로 3-11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계획도로 선형 일부 변경</li> <li>- 면적 기정 1,009㎡</li> <li>  변경 1,012㎡ (증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도로 개설로 기 결정된 도시계획 도로의 불일치 구간을 정비하여 현황 도로를 반영하기 위한 도로의 선형 변경</li> </ul>

8.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해당없음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3) 및 도로과(☎061-659-40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매용		
1	기정	신월동	19-5	답	75	75	공	여수시				
	변경	신월동	19-5	답	75	75	공	여수시				
2	기정	신월동	25-6	대	48	48	공	여수시				
	변경	신월동	25-6	대	48	48	공	여수시				
3	기정	신월동	25-7	대	27	27	공	여수시				
	변경	신월동	25-7	대	27	27	공	여수시				
4	기정	신월동	25-8	전	21	21	공	여수시				
	변경	신월동	25-8	전	21	21	공	여수시				
5	기정	신월동	25-9	대	1	1	공	여수시				
	변경	신월동	25-9	대	1	1	공	여수시				
6	기정	신월동	26-3	답	158	158	공	여수시				
	변경	신월동	26-3	답	158	158	공	여수시				
7	기정	신월동	27-8	도	22	22	공	여수시				
	변경	신월동	27-8	도	22	22	공	여수시				
8	기정	신월동	27-9	답	37	37	공	여수시				
	변경	신월동	27-9	답	37	37	공	여수시				
9	기정	신월동	27-10	장	4	4	공	여수시				
	변경	신월동	27-10	장	4	4	공	여수시				
10	기정	신월동	27-11	답	80	80	공	여수시				
	변경	신월동	27-11	답	80	80	공	여수시				
11	기정	신월동	27-12	답	104	104	공	여수시				
	변경	신월동	27-12	답	104	104	공	여수시				
12	기정	신월동	27-13	대	246	246	공	여수시				
	변경	신월동	27-13	대	246	246	공	여수시				
13	기정	신월동	31-6	도	3	3	공	여수시				
	변경	신월동	31-6	도	3	3	공	여수시				
14	기정	신월동	31-7	대	1	1	공	여수시				
	변경	신월동	31-7	대	1	1	공	여수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매용		
15	신규	신월동	32-1	전	3	3	공	여수시				
16	기정	신월동	32-9	전	20	20	공	여수시				
	변경	신월동	32-9	전	20	20	공	여수시				
17	기정	신월동	32-10	도	1	1	공	여수시				
	변경	신월동	32-10	도	1	1	공	여수시				
18	기정	신월동	1075-13	대	26	26	공	여수시				
	변경	신월동	1075-13	대	26	26	공	여수시				
19	기정	신월동	1075-14	대	1	1	공	여수시				
	변경	신월동	1075-14	대	1	1	공	여수시				
20	기정	국동	1093-8	장	51	51	공	여수시				
	변경	국동	1093-8	장	51	51	공	여수시				
21	기정	국동	1093-9	대	83	83	공	여수시				
	변경	국동	1093-9	대	83	83	공	여수시				

여수시 공고 제2023-2161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사전 열람 공고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 중에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8. 3.

여수시장

1. 사업시행지 위치(변경없음): 여수시 봉강동 27-32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 2-538)사업
  - 나. 명 칭: 봉강동 진성여고 일원 교행지 설치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 가. 면 적: 기정 293㎡ → 변경 308㎡(층 15)
  - 나. 규 모: 기정 L=100m, B=9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여수시장
  - 나. 주 소: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2022. 8. 25. ~ 2023. 12. 31.
  - 변경: 2022. 8. 25. ~ 2025.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다음
7.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 교통시설 결정(변경) 조서
    -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538	8.0 ~ 9.0	국 지 도로	563	소2-294 (봉강동524-14대)	소2-534 (봉강동32도)	일반 도로	진성 여고	전남고-15 (77.01.27.)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변경	소로	2	538	8.0 ~ 9.0	국 지 도로	563	소2-294 (봉강동524-14대)	소2-534 (봉강동32도)	일반 도로	진성 여고	전남고-15 (77.01.27.)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538	소로 2-538	·도로 시종점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 ·교행지 설치 : 증 168㎡	·진성여고 부근 교행지 설치 9.0m 폭원으로 확장

■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8	학교	진성여중·여고	봉강동 203-1 일원	51,538	감9	51,529	전고-98호 '87. 6.13.	

나.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8	학교	·진성여중·여고 면적 변경 - 기정: 51,538㎡ → 변경: 51,529㎡(감 9)	·진성여고 부근 교행지 설치에 편입된 면적 제척

8. 공람기간: 2023. 8. 3.~ 2023. 8. 17.(14일간)

9. 공람장소: 여수시 도시계획과, 도로과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1) 및 도로과(☎061-659-40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변경)

구분	주소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대장면적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의종류와 내 용	비고	
1	전라남도 여수시 봉강동	203-105	학	11	2	11	봉강동 203-1	학교법인 호석학원	-				
2	전라남도 여수시 봉강동	203-85	전	9	6	5	여수시	공					
3	전라남도 여수시 봉강동	203-98	전	13	2	-	봉강동 203-1	학교법인 호석학원	-				
4	전라남도 여수시 봉강동	203-69	전	1	1	1	여수시	공					
5	전라남도 여수시 봉강동	203-107	전	9	-	9	봉강동 203-1	학교법인 호석학원	-				
6	전라남도 여수시 봉강동	203-90	전	257	26	4	여수시	공					
7	전라남도 여수시 봉강동	203-106	임	3	-	3	봉강동 203-1	학교법인 호석학원	-				
8	전라남도 여수시 봉강동	203-88	임	3	1	3	여수시	공					
9	전라남도 여수시 봉강동	203-87	임	38	7	3	여수시	공					
10	전라남도 여수시 봉강동	203-108	전	14	-	14	봉강동 203-1	학교법인 호석학원	-				
11	전라남도 여수시 봉강동	203-104	전	124	2	-	봉강동 203-1	학교법인 호석학원	-				
12	전라남도 여수시 봉강동	203-86	전	30	17	7	여수시	공					
13	전라남도 여수시 봉강동	28-4	전	21	17	8	여수시	공					
14	전라남도 여수시 봉강동	28-5	전	24	-	24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산길 1**, 2**동 5**호 (창신동, **아파트)	송**		남일 새마을 금고	근저당권		
15	전라남도 여수시 봉강동	27-32	전	123	40	15	여수시	공					
16	전라남도 여수시 봉강동	29-4	도	28	3	-	여수시	공					
17	전라남도 여수시 봉강동	27-36	전	21	-	18	봉산박수골 **	조**	-				

구분	주소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대장 면적	당초	변경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의종류와 내용	비고
18	전라남도 여주시 봉강동	26-26	대	21	-	21	봉강동 203-1	학교법인 호석학원	-			
19	전라남도 여주시 봉강동	26-24	대	34	23	16	여주시	공				
20	전라남도 여주시 봉강동	474-7	전	63	-	56	봉강동 2**	김**	-			
21	전라남도 여주시 봉강동	474-8	전	24	-	18	봉강동 2**	김**	-			
22	전라남도 여주시 봉강동	474-5	전	42	18	21	여주시	공				
23	전라남도 여주시 봉강동	26-21	도	10	1	-	여주시	공				
24	전라남도 여주시 봉강동	26-25	대	45	2	-	여주시	공				
25	전라남도 여주시 봉강동	474-6	도	4	1	1	여주시	공				
26	전라남도 여주시 봉강동	474-3	전	195	100	47	여주시	공				
27	전라남도 여주시 봉강동	29-4	도	28	-	1	여주시	공				
28	전라남도 여주시 봉강동	26-23	전	153	24	2	여주시	공				
합 계				1,358	293	308						

여수시 공고 제2023-2209호

##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준공검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8. 3.

### 여수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여수시 신기동 7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사업
  - 나. 명 칭: 대광로제비양 아파트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조성사업
3. 준공 면적 및 규모
  - 가. 면적: 6,302.0㎡(도로 4,515.9, 공원 1,786.1)
  - 나. 규모: L=345m, B=11m/L=41m, B=15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주)대국개발 대표 박준수
  -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B동 3층 301호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일
  - 가. 착수년월일: 2021. 4. 22.
  - 나. 공사완료일: 2023. 7. 20.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공고 제2023-1269호

나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공사완료 공고

나주시 이창동 738번지 일원 “나주시 보건소 별동 증축공사” 의 나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3. 8. 3.

나주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이창동 738번지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나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 명 칭 : 나주시 보건소 별동 증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가. 토지이용

구분		면적 (㎡)	구성비 (%)	비고
나주시 보건소	건물	2,166.0	35.3	
	도로 및 주차장	2,604.0	42.5	
	보도	435.0	7.1	
	녹지	924.0	15.1	
계		6,129.0	100.0	

나. 건축

구분	기존	증축	합계
건축면적	1,193.54㎡	991.01㎡	2,184.55㎡
연면적	2,743.49㎡	2,962.60㎡	5,706.09㎡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2,743.49㎡	2,743.18㎡	5,486.67㎡
건폐율	19.46%	16.16%	35.62%
용적률	44.73%	44.72%	89.45%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나주시장 / 주 소: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 착수일: 2019. 12. 27. / 준공일: 2023. 6. 16.

6. 편입토지 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동	지 번			
합계(총10필지)				6,129.0	
1	이창	739	대	811.6	나주시
2	이창	740-1	대	2,367.0	나주시
3	이창	475-1	대	274.0	나주시
4	이창	475-6	대	60.0	나주시
5	이창	738	잡	667.3	나주시
6	이창	476	답	493.0	나주시
7	이창	475-4	유	261.0	나주시
8	이창	475-3	도	228.0	나주시
9	이창	801-1	도	701.1	나주시
10	이창	692-12	구	266.0	나주시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도시과(061-339-89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고시 제2023-238호

광양 도시계획시설(시장 제2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광양시 광양읍 읍내리 252-1번지 일원의 광양 도시계획시설(시장 제2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23. 8. 3.

광양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광양시 광양읍 읍내리 252-1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광양 도시계획시설(시장 제2호)사업
  - 명 칭: 광양 매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변경)
  - 면 적: 4,591㎡(변경없음)
  - 건축규모: (당초) 2,744.44㎡ / (변경) 2,768.24㎡(층 23.80㎡)
    - 지상 1층: 2,021.81㎡(소매점, 푸드코트, 수산센터, 공용공간 등)
    - 지상 2층: (당초) 722.63㎡(근린생활시설, 식당/카페)
    - (변경) 746.43㎡(근린생활시설, 식당/카페)-층 23.8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 성 명: 광양시장(당초: 지역경제과장 / 변경: 투자경제과장)
  - 주 소: 광양시 시청로 33
5. 사업 착수 및 준공 예정일(변경)
  - 당 초: 2022. 7. 14. ~ 2023. 7. 31.
  - 변 경: 2022. 7. 14. ~ 2023. 12. 31.(층 5개월)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변경없음)

구분	토지 소재지			지목	면 적(㎡)		소유자		비고
	읍	리	지번		지적	편입	성명	주소	
1	광양	읍내	251-1	대	46	46	광양시	광양시 시청로 33	
2	광양	읍내	252-1	대	4,545	4,545	광양시	광양시 시청로 33	

7. 관계도서 :계재 생략(광양시 투자경제과 및 도시과 비치)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투자경제과(☎061-797-2359) 및 도시과(☎061-797-284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고시 제2023-239호

광양 도시계획시설(중로 2-185호선)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657번지 일원에 광양 도시계획시설(중로 2-185호선)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023. 8. 3.

광양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65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광양 도시계획시설(중로 2-185호선) 사업
- 명 칭: 광양의 봄 선사인 공동주택 진입도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A=14,826㎡(도로 7,835㎡, 법면 6,991㎡)
- 규 모

구분	시행자	면적(㎡)	규모(m)		기점	종점	비고
			언장	폭원			
전체	-	9,022	672	12~15	대로1-6	중로1-148	
금회시행	덕진종합건설(주)	7,835 (14,826)	672	10~15	대로1-6	중로1-148	( ) 법면면적 포함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덕진종합건설(주)
- 주 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77, 906호(중앙동, 동성올림픽타운)

5. 사업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착수 예정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준공 예정일: 2024.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다음

7. 관계도서: 게재 생략(광양시청 도시과 비치)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도시과(☎061-797-28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신청외 면적 (㎡)	소유자		비고
					도로	법면	계		성명	주소	
합계				175,424	7,835	6,991	14,826	160,598			
1	광양읍 우산리	산114	임	119,008	56	296	352	118,656	이*희 외 6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06, 이동 1302호 (반포동, 삼호기든맨션)	
2	광양읍 우산리	산120-12	임	828	265	34	299	529	주*진 외 1인	전라남도 광양시 가야로 345, 103동 1204호 (광영동, 브라운스톤기아아파트)	
3	광양읍 우산리	산120-17	임	660	10	3	13	647	허*근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273번안길 34-2(봉황동)	
4	광양읍 우산리	산120-26	임	826	325	129	454	372	조*은 외 23인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동 1103, 더계동일스위트2차 105-203	
5	광양읍 우산리	산120-27	임	826	333	174	507	319	주식회사 이*	전라남도 여수시 상산로 21, 3층(화장동)	
6	광양읍 우산리	산120-28	임	826	168	132	300	526	박*표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51-16, 몰운대아파트 112-1503	
7	광양읍 우산리	산125	임	19,365	3,256	5,110	8,366	10,999	덕진종합건설 주식회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77, 906호	
8	광양읍 우산리	산131	임	330		330	330	0	덕진종합건설 주식회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77, 906호	
9	광양읍 우산리	산133	임	5,256	31	106	137	5,119	김*곤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우산리 626	
10	광양읍 용강리	650	답	316	15		15	301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1	광양읍 용강리	654	답	60	36		36	24	용강현대 지역주택조합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대림오성로 98	
12	광양읍 용강리	655	답	83	47		47	36	용강현대 지역주택조합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대림오성로 98	
13	광양읍 용강리	656	답	146	146		146	0	용강현대 지역주택조합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대림오성로 98	
14	광양읍 용강리	656-1	답	261	116		116	145	용강현대 지역주택조합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대림오성로 98	
15	광양읍 용강리	657	답	548	390		390	158	용강현대 지역주택조합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대림오성로 98	
16	광양읍 용강리	657-1	답	12	12		12	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17	광양읍 용강리	산5	임	23,207	1,034	677	1,711	21,496	김*곤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454-13	
18	광양읍 용강리	산10	임	711	418		418	293	용강현대 지역주택조합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대림오성로 98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신청외 면적 (㎡)	소유자		비고
					도로	법면	계		성명	주소	
19	광양읍 용강리	산11-2	임	357	215		215	142	용강현대 지역주택조합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대림오성로 98	
20	광양읍 용강리	산11-4	임	20	20		20	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1	광양읍 용강리	산11-7	임	671	89		89	582	용강현대 지역주택조합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대림오성로 98	
22	광양읍 용강리	산11-9	임	182	130		130	52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3	광양읍 용강리	산11-10	임	224	139		139	85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4	광양읍 용강리	산11-11	임	225	140		140	85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5	광양읍 용강리	산11-27	임	325	323		323	2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6	광양읍 용강리	산11-38	임	150	120		120	3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7	광양읍 용강리	산11-46	임	1	1		1	0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광양시 고시 제2023-240호

## 광양 도시계획시설(광장 제3호)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820-1번지 일원에 광양 도시계획시설(광장 제3호)사업 실시계획인가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023. 8. 3.

### 광양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820-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광장 제3호)사업
  - 명 칭: 동천 경관광장 조성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23,86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광양시장(공원과장)
  - 주 소: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5. 사업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착 수 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준공예정일: 2024. 5.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 다음
7. 관계도서: 게재 생략(광양시청 공원과 및 도시과 비치)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공원과(☎061-797-4728) 및 도시과(☎061-797-28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총 계 (42필지)				117,489	23,863	-	-	-	-	-
1	광양읍 목성리	1021-2	천	88,480	61	국(건설부)	-	-	-	-
2	광양읍 용강리	462-17	도	84	20	국(건설부)	-	-	-	-
3	광양읍 용강리	820-2	천	288	288	국(건설부)	-	-	-	-
4	광양읍 용강리	820-59	천	170	170	국(건설부)	-	-	-	-
5	광양읍 용강리	820-60	천	116	116	국(건설부)	-	-	-	-
6	광양읍 용강리	820-110	천	945	944	국(건설부)	-	-	-	-
7	광양읍 용강리	820-115	천	225	1	국(건설부)	-	-	-	-
8	광양읍 용강리	462-21	답	12	12	공(광양시)	-	-	-	-
9	광양읍 용강리	462-22	답	66	66	공(광양시)	-	-	-	-
10	광양읍 용강리	462-23	답	519	238	공(광양시)	-	-	-	-
11	광양읍 용강리	462-24	답	1,204	247	공(광양시)	-	-	-	-
12	광양읍 용강리	820-6	답	262	262	공(광양시)	-	-	-	-
13	광양읍 용강리	820-11	도	65	65	공 (전라남도)	-	-	-	-
14	광양읍 용강리	820-17	답	280	6	공(광양시)	-	-	-	-
15	광양읍 용강리	820-19	잡	1,365	1,358	공(광양시)	-	-	-	-
16	광양읍 용강리	820-75	답	519	234	공(광양시)	-	-	-	-
17	광양읍 용강리	820-98	답	209	106	공(광양시)	-	-	-	-
18	광양읍 용강리	820-102	답	200	172	공(광양시)	-	-	-	-
19	광양읍 용강리	820-103	답	53	52	공(광양시)	-	-	-	-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0	광양읍 용강리	820-104	잡	135	113	공(광양시)	-	-	-	-
21	광양읍 용강리	820-107	천	1,100	87	공(광양시)	-	-	-	-
22	광양읍 용강리	820-109	천	708	195	공(광양시)	-	-	-	-
23	광양읍 용강리	820-111	천	121	19	공(광양시)				
24	광양읍 목성리	1021-7	답	646	156	송*섭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			
25	광양읍 용강리	462-3	답	1,506	1,506	박*운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동3길 **-*			
26	광양읍 용강리	462-4	답	762	762	단양우씨예안군 파광양종중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남문길 6*-*			
27	광양읍 용강리	462-5	답	2,114	2,114	최*자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예구길 8, 10*동 ***호	-	-	-
28	광양읍 용강리	462-6	답	3,234	3,234	서*호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길 12, 20*동 ****호	-	-	-
29	광양읍 용강리	462-7	답	1,038	1,038	송*섭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725, 오성타워맨션 1**_***	-	-	-
30	광양읍 용강리	462-8	답	1,374	1,374	김*자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5***	-	-	-
31	광양읍 용강리	462-9	답	1,512	1,512	문*석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두3길 **	-	-	-
32	광양읍 용강리	462-10	답	1,752	1,752	차*국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	-	-	-
33	광양읍 용강리	462-11	답	473	473	김*숙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서평길 9, 10*동 ****호	-	-	-
34	광양읍 용강리	462-12	답	123	123	김*숙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서평길 9, 10*동 ****호	-	-	-
35	광양읍 용강리	775-2	답	761	710	박*순	전라남도 순천시 구암3길 22, 11*동 ****호	-	-	-
36	광양읍 용강리	820-1	답	3,779	2,988	송*섭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	-	-	-
37	광양읍 용강리	820-3	답	238	238	송*섭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1725, 오성타워맨션 10*_***	-	-	-
38	광양읍 용강리	820-12	답	192	192	이*식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	-	-	-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관 계 인		
				지 적	편 입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9	광양읍 용강리	820-13	답	556	556	이*식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	-	-	-
40	광양읍 용강리	820-14	답	64	64	서*호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길 12, 20*동 ****호	-	-	-
41	광양읍 용강리	820-15	답	68	68	문*석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두길 **	-	-	-
42	광양읍 용강리	820-16	답	68	68	김*순 (3/1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85-222, 주공아파트 10*~***			
						장*식 (2/1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85-222, 주공아파트 10*~***			
						장*심 (2/1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454, 수지1차 길훈아파트 10*~****			
						장*선 (2/1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7-7, 초원아파트 50*~***			
						장*식 (2/11)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4길 65, 주공아파트 10*동 ***호			

광양시 공고 제2023-1668호

**광양 도시계획시설(중로 2-94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광양시 광영동 산44-7번지 일원에 광양 도시계획시설(중로 2-94호선)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완료를 공고합니다.

2023. 8. 3.

**광양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광양시 광영동 산44-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광양 도시계획시설(중로 2-94호선) 사업
  - 명 칭: 광영고등학교 앞 도로 확장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 규 모: 1,866㎡ (L=200m, B=5~9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광양시장(도로과장)
  - 주 소: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5. 사업착수 및 준공일
  - 2020. 5. 21. ~ 2023. 6. 30.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도로과(☎061-797-2940) 및 도시과(☎061-797-28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곡성군 고시 제2023-102호

곡성 군계획시설(소로1-101)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946-1번지 일원에 “곡성스테이션 1928 진입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를 위한 곡성 군계획시설(소로1-101)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 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023. 8. 3.

곡성군수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946-1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종류 : 군계획시설(소로1-101) 사업
  - 나. 명 칭 : 곡성스테이션 1928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3. 면적 또는 규모
  - 가. 사업면적 : 2,401㎡(도로 1,799㎡, 도로 외 602㎡)
  - 나. 사업규모 : L=177.0m, B=10.0m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곡성군수(인구정책과장)
  - 나. 주 소 :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가. 착수일 : 2022. 2. 4.
  - 나.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3. 12. 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다음
-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인구정책과(☎061-360-2951),도시경제과(☎061-360-87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도로	도로외	합계	성 명	주 소	
1	오곡면 오지리	1075	구	5,204	84	-	84	국	농림수산부	
2	“	946-6	답	2,370	299	-	299	조*훈	곡성군 오곡면 기차마을로	기정
		946-6	답	2,370	299	-	299	곡성군		변경
3	“	946-5	답	3,031	299	-	299	조*훈	곡성군 오곡면 기차마을로	기정
		946-5	답	3,031	299	-	299	곡성군		변경
4	“	946-4	답	2,998	308	-	308	조*훈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기정
		946-4	답	2,998	308	-	308	곡성군		변경
5	“	1105	구	1,020	86	-	86	국	기획재정부	기정
		1105-1	구	62	62		62	국	기획재정부	변경
		1105-2	구	383		383	383	국	기획재정부	변경
		1105-3	구	23	23		23	국	기획재정부	변경
6	“	946-3	답	3,032	405	105	510	조*훈	곡성군 오곡면 기차마을로	기정
		946-3	답	3,032	405	105	510	곡성군		변경
7	“	946-2	답	810	117	49	166	조*훈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기정
		946-2	답	810	117	49	166	곡성군		변경
8	“	946-1	답	1,695	200	65	265	홍*자	전주시 덕진동 2가	기정
		946-1	답	1,695	200	65	265	곡성군		변경
9	“	1102	도	2,495	2	-	2	국	농림수산부	
합 계	9필지				1800	219	2,019			기정
합 계	11필지				1799	602	2,401			변경

화순군 고시 제2023-102호

**화순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경미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화순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3. 8. 3.

**화순군수**

1. 화순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조서 : 다음
2. 화순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 화순군청 산림과(379-36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화순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조서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나.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공간시설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③	연양공원	체육공원	화순읍 강정리 252-3번지 일원	39,412	감595	38,817	1988.01.16.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건 축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바닥면적		연 면 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39,412	△595	38,817	1,637.60	-	1,689.60	-	
공원시설소계	17,461	-	17,461	1,637.60	-	1,689.60	-	
도로및광장	1,208	-	1,208	-	-	-	-	
조경시설	415	-	415	-	-	-	-	인공폭포
휴양시설	510	-	510	-	-	-	-	휴게쉼터
운동시설	13,876	-	13,876	1,380	-	1,380	-	자연체험장
편익시설	490	-	490	92	-	144	-	전망대 등 3종
교양시설	962	-	962	165.60	-	165.60	-	전시장
녹 지	21,951	△595	21,356	-	-	-	-	

나.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번호	시 설 명		면 적(㎡)			구성비(%)		건축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39,412	△595	38,817	100.0	100.0	1,637.60		1,689.60		
도로 및 광장	1	도로 및 광장 소계		1,208	-	1,208	3.1	3.1					
		연결로 및 진입로 합계		459	-	459	1.2	1.2					
		연결로	연결로	204	-	204	0.5	0.5					
		진입로	진입로	255	-	255	0.7	0.7					

구분	번호	시 설 명		면 적(㎡)			구성비(%)		건축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산책로 합계		734	-	734	1.9	1.9							
	산책로-1	산책로-1	32	-	32	0.1	0.1							
	산책로-3	산책로-3	33	-	33	0.1	0.1							
	산책로-4	산책로-4	89	-	89	0.2	0.2							
	산책로-5	산책로-5	274	-	274	0.7	0.7							
	산책로-18	산책로-18	287	-	287	0.7	0.7							
	산책로-19	산책로-19	19	-	19	0.1	0.1							
1-1	광 장	광 장	15	-	15	-	-							
조경 시설	조경시설 소계		415	-	415	1.1	1.1							
	2-1	인공폭포	인공폭포	415	-	415	1.1	1.1						
휴양 시설	휴양시설 소계		510	-	510	1.3	1.3							
	3-1	게이트볼장쉼터	게이트볼장쉼터	98	-	98	0.3	0.3						
	3-2	휴게쉼터	휴게쉼터	49	-	49	0.1	0.1						
	3-3	마운딩쉼터	마운딩쉼터	363	-	363	0.9	0.9						
운동 시설	운동시설 소계		13,876	-	13,876	35.2	35.7	1,380			1,380			
	4-1	게이트볼장(실내)	게이트볼장(실내)	1,795	-	1,795	4.5	4.6	1,380			1,380		
	4-2	다목적구장	다목적구장	8,323	-	8,323	21.1	21.4						
	4-3	다목적운동장	다목적운동장	1,047	-	1,047	2.7	2.7						
	4-5	자연체험장 합계		2,711	-	2,711	6.9	7.0						
		자연체험장-1	자연체험장-1	788	-	788	2.0	2.0						
		자연체험장-2	자연체험장-2	977	-	977	2.5	2.5						
		자연체험장-3	자연체험장-3	334	-	334	0.8	0.9						
		자연체험장-4	자연체험장-4	365	-	365	0.9	0.9						
		자연체험장-5	자연체험장-5	182	-	182	0.5	0.5						
자연체험장-6		자연체험장-6	35	-	35	0.1	0.1							
자연체험장-7	자연체험장-7	30	-	30	0.1	0.1								
편의 시설	편의시설 소계		490	-	490	1.2	1.3	92			144			
	5-2	전 망 대	전 망 대	320	-	320	0.8	0.8	26			78		
	5-5	데크로드-3	데크로드-3	104	-	104	0.2	0.3						
	5-6	사 무 실	사 무 실	66	-	66	0.2	0.2	66			66		
교양 시설	교양시설 소계		962	-	962	2.4	2.5	165.60			165.60			
	6-1	전 시 장	전 시 장	962	-	962	2.4	2.5	165.60			165.60		

구분	번호	시 설 명		면 적(㎡)			구성비(%)		건축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녹지	녹지 소계		21,951	△595	21,356	55.7	55.0						
	7-1	녹 지-1	녹 지-1	19,842	△595	19,247	50.4	49.5					
	7-4	녹 지-4	녹 지-4	958	-	958	2.4	2.5					
	7-6	녹 지-6	녹 지-6	1,078	-	1,078	2.7	2.8					
	7-7	녹 지-7	녹 지-7	73	-	73	0.2	0.2					

다.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③	연양 공원	- 공원면적 제척 1) 면 적 : A=39,412㎡ → A=38,817㎡ (감)595㎡	· 연양체육공원 녹지 내에 문중묘지 및 불부합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토지 제척 반영

강진군 고시 제2023-73호

사초 오토캠핑장 편익시설 신축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사초 오토캠핑장 편익시설 신축공사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88조, 제91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8. 3.

강진군수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진군 신전면 사초리 852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
  - 나. 명 칭 : 사초 오토캠핑장 편익시설 신축공사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가. 군계획시설(유원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유원지	신전면 사초리 852	18,734	'10.5.14. 강진군 고시 제2010-26호	금회시행 (편익시설) 868㎡

나.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 계		18,734	100.0	
공공시설 용지	운동시설	806	4.3	
	관리시설	1,344	7.2	
	편익시설	868	4.6	금회시행
	휴양시설	7,723	41.2	
녹지용지	녹 지	7,993	42.7	

-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강진군수
  - 나. 주 소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일 : 실시계획인가일

나. 준공예정일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비고
	면	리	지번					
	총계		1필지					
1	신전면	사초리	852	잡	21,417.6	868	강진군	

7. 관련설계도서 및 도면 : 게재생략(강진군 문화관광실, 건설과 비치)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문화관광실(061-430-3323) 및 건설과(061-430-39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공고 제2023-697호

군동면 호계리 공동주택 군계획시설(도로)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사전 열람 공고

군동면 호계리 공동주택 군계획시설(도로)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서류의 열람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8. 3.

강진군수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882-1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군계획시설(도로)사업
  - 나. 명 칭 : 군동면 호계리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따른 진출입로 조성사업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3	군동면 호계리 000파트	군동면 호계리 879-2번지 일원	15,284	'23.04.13. 강진군 고시 제2023-38호	금회시행(도로) 1,967㎡

나.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적(m <sup>2</sup> )	구성비(%)	비고
합 계	15,284	100.0	
공동주택	2,632	17.2	
근린생활시설	188	1.2	
주민공동시설	826	5.4	
관리사무소	79	0.5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경비실	62	0.4	
내부도로 및 주차장	5,428	35.5	
녹지	4,102	26.9	
도로	1,967	12.9	금회시행

다. 군계획시설 결정 조서

○ 군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49	8	국지도로	308	소1-137	중1-10	일반도로	전고 192호 '77.09.19.	
변경	소로	2	49	8-15	국지도로	308 (109)	소1-137	중1-10	일반도로	전고 192호 '77.09.19.	
기정	소로	2	52	8	국지도로	130	소로2-49 호계리888-7	군동면 호계리 877-4	일반도로	전고 192호 '77.09.19.	
변경	소로	1	141	10	국지도로	146	소로2-49 호계리888-7	군동면 호계리 877-4	일반도로	전고 192호 '77.09.19.	

○ 금회 사업시행 계획

구분	총괄계획	금회시행 계획	비고
소로(국) 1-141	B=10.0m, L=146.0m	B=2.0m, L=146.0m	
소로(국) 2-49	B=8.0-15.0m, L=308.0m	B=8.0m-15.0m, L=109.0m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승원디앤씨 주식회사 (사업시행자 지정)
- 나.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57(치평동, 매트로빌딩)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착수일 : 실시계획인가일
- 나. 준공예정일 : 2025. 8.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주소	비고
	면	리	지번						
총계			22필지	7,870	1,967				
1	군동면	호계리	882-1	답	774	70	승원디앤씨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57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주소	비고
	면	리	지번						
2	군동면	호계리	882-2	도	155	151	국(건설교통부)		
3	군동면	호계리	882-3	대	922	68	승원디앤씨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57	
4	군동면	호계리	883-2	도	136	69	국(건설교통부)		
5	군동면	호계리	877-4	도	811	74	강진군		
6	군동면	호계리	877-5	도	3	3	강진군		
7	군동면	호계리	877-7	도	183	183	강진군		
8	군동면	호계리	879-5	도	165	161	강진군		
9	군동면	호계리	888-5	대	376	5	국(농림부)		
10	군동면	호계리	888-6	도	207	20	강진군		
11	군동면	호계리	888-7	도	103	103	강진군		
12	군동면	호계리	900-1	도	20	18	국(건설교통부)		
13	군동면	호계리	900-2	대	301	1	강진정미 주식회사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901-2	
14	군동면	호계리	900-3	대	413	122	김O성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900-3	
15	군동면	호계리	900-8	대	344	15	(주)신우주택 아이엔케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	
16	군동면	호계리	900-13	대	36	9	강진군		
17	군동면	호계리	901-1	도	93	90	강진정미 주식회사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901-2	
18	군동면	호계리	901-2	대	1,742	334	강진정미 주식회사	강진군 군동면 호계리 901-2	
19	군동면	호계리	928-1	대	152	14	승원디앤씨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57	
20	군동면	호계리	1203-9	도	822	412	국(건설교통부)		
21	군동면	호계리	1204-12	도	32	8	국(농림부)		
22	군동면	호계리	1204-10	구	80	37	국(농림부)		

7. 관련설계도서 및 도면 : 게재생략(강진군 건설과 비치)

8. 열람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3. 8. 3. ~ 8. 17. (14일간)

나. 장 소 : 강진군 건설과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건설과(061-430-39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군 고시 제2023-122호

군계획시설결정 실효,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법 시행령 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따른 연접한 군계획시설에 대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8. 3.

해남군수

가. 군계획시설 결정조서

○ 교통시설(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4	25	주간선 도로	3,210	동외리 구역계	문내면 남측구역계	일반 도로	-	전남고시 제97호 (1982.6.15)	
변경	대로	3	4	25	주간선 도로	2,866	중로1-17	문내면 남측구역계	일반 도로	-	전남고시 제97호 (1982.6.15)	14호 광장 실효에 따른 선형변경
기정	대로	3	5	25	주간선 도로	678	14호 교통광장	동외리 구역계	일반 도로	-	전남고시 제97호 (1982.6.15)	
변경	중로	2	28	15	주간선 도로	866	동외리 구역계	동외리 구역계	일반 도로	-	전남고시 제97호 (1982.6.15)	미집행 구간 실효 및 선형변경
기정	소로	1	21	10	국지 도로	139	소로2-6	북측구역계	일반 도로	-	전남고시 제243호 (2009.1.13)	
변경	소로	1	21	10	국지 도로	130	중로2-28	북측구역계	일반 도로	-	전남고시 제243호 (2009.1.13)	대로3-5 미집행 구간 실효에 따른 선형변경
기정	소로	2	32	8	보조 간선 도로	576	대로3-5	대로3-7	일반 도로	-	전남고시 제97호 (1982.6.15)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소로	2	32	8	보조 간선 도로	572	중로2-28	대로3-7	일반 도로	-	전남고시 제97호 (1982.6.15)	대로3-5 미집행 구간 실효에 따른 선형변경
폐지	대로	3	6	25	주간선 도로	210	14호 교통광장	중로1-17	일반 도로	-	전남고시 제243호 (2002.1.3)	14호 광장 실효에 따른 노선폐지

○ 공간시설(광장)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4	광장	교통광장	문내면 동우리 492-1전 번지 일원	8,600	감)8,600	-	전남고시 제243호 (2002.01.03)	실효

○ 공간시설(녹지)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6	녹지	완충녹지	북평면 대로3-11호선변	2,533	감)711	1,822	전남고시 제260호 (1995.12.30)	미집행 구간 실효

○ 공간시설(유원지)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2	우항유원지	황산면 우항리 신51-17임 번지 일원	81,800	감)81,800	-	전남고시 제203호 (2002.12.30)	실효

나. 실효일자 : 2023. 8.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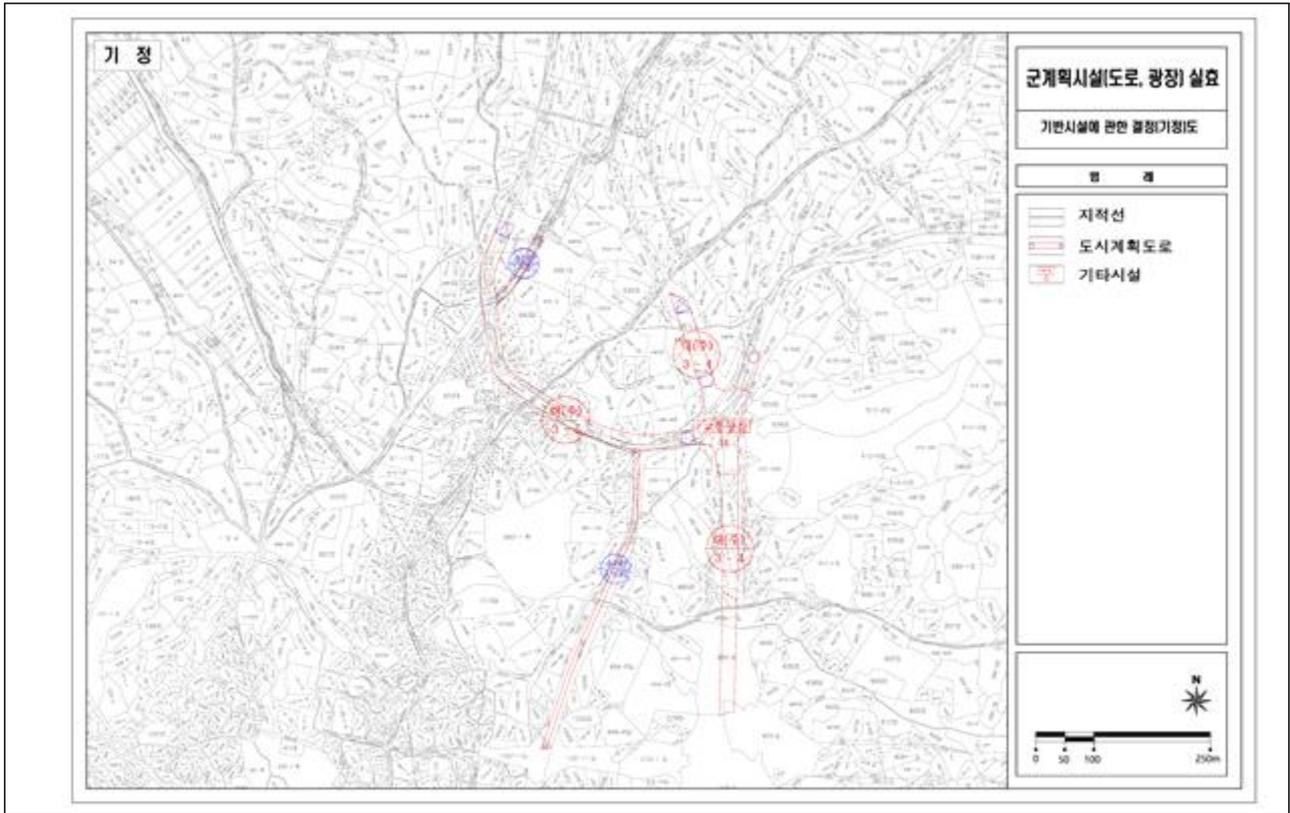
다. 실효사유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미 시행

라. 지형도면 : 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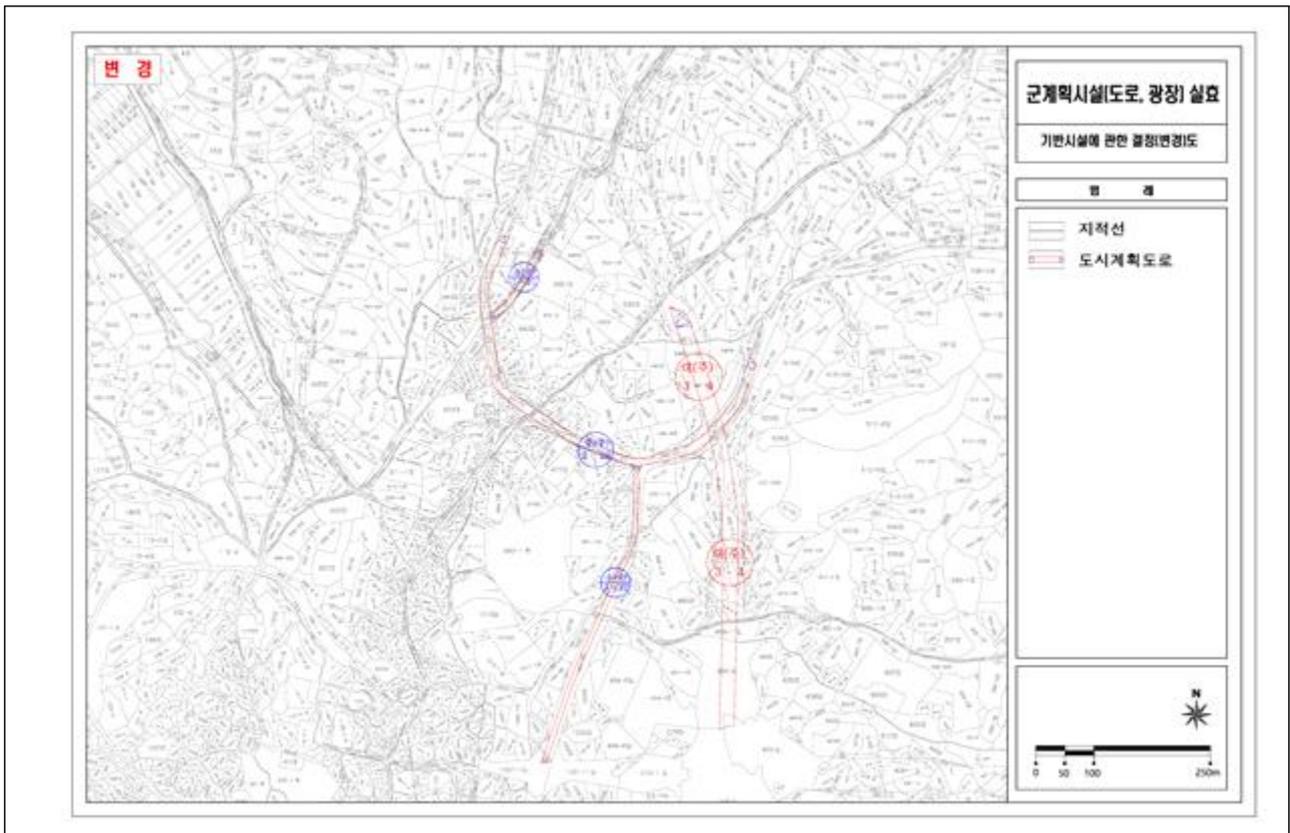
마. 관계도서는 해남군 건설도시과(061-530-5445)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  
니다.

군계획시설(도로, 광장) 결정 실효 지형도면고시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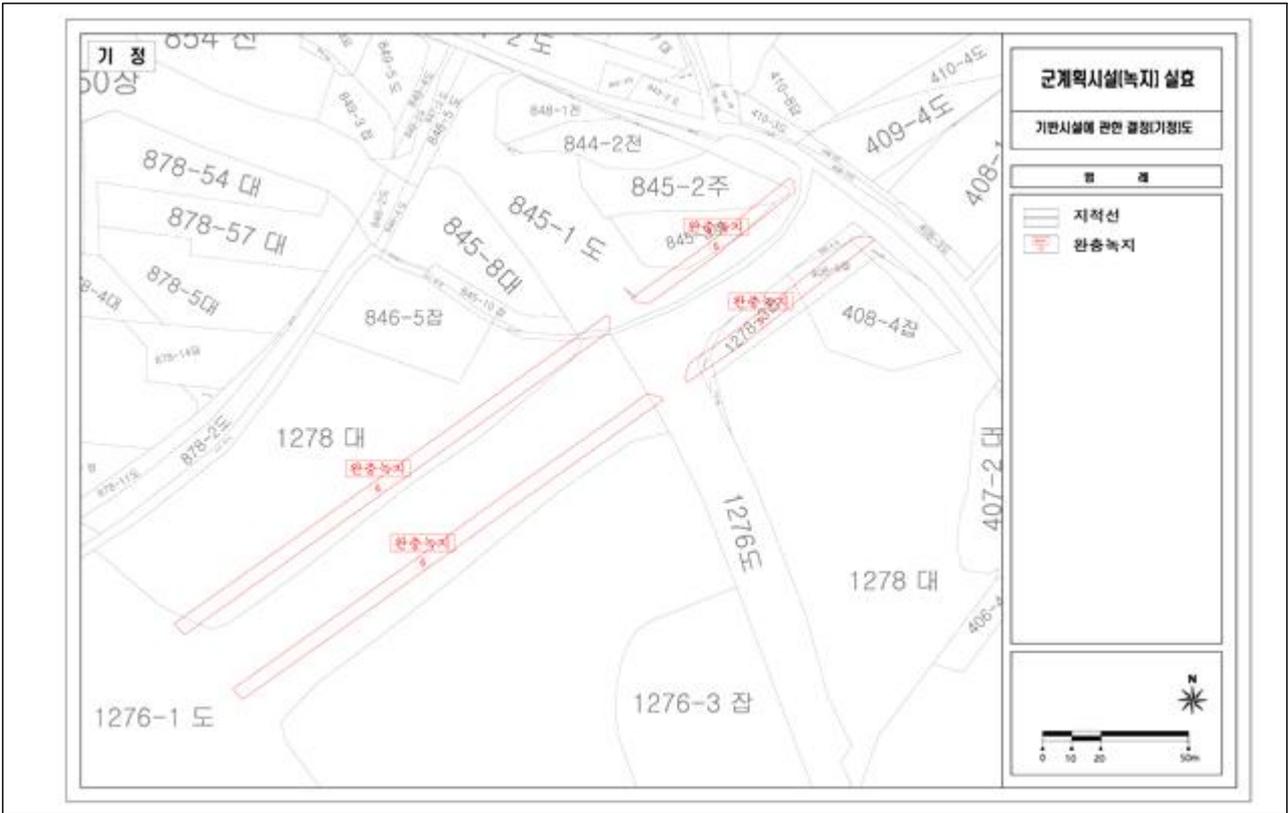


○ 변경



군계획시설(녹지) 결정 실효 지형도면고시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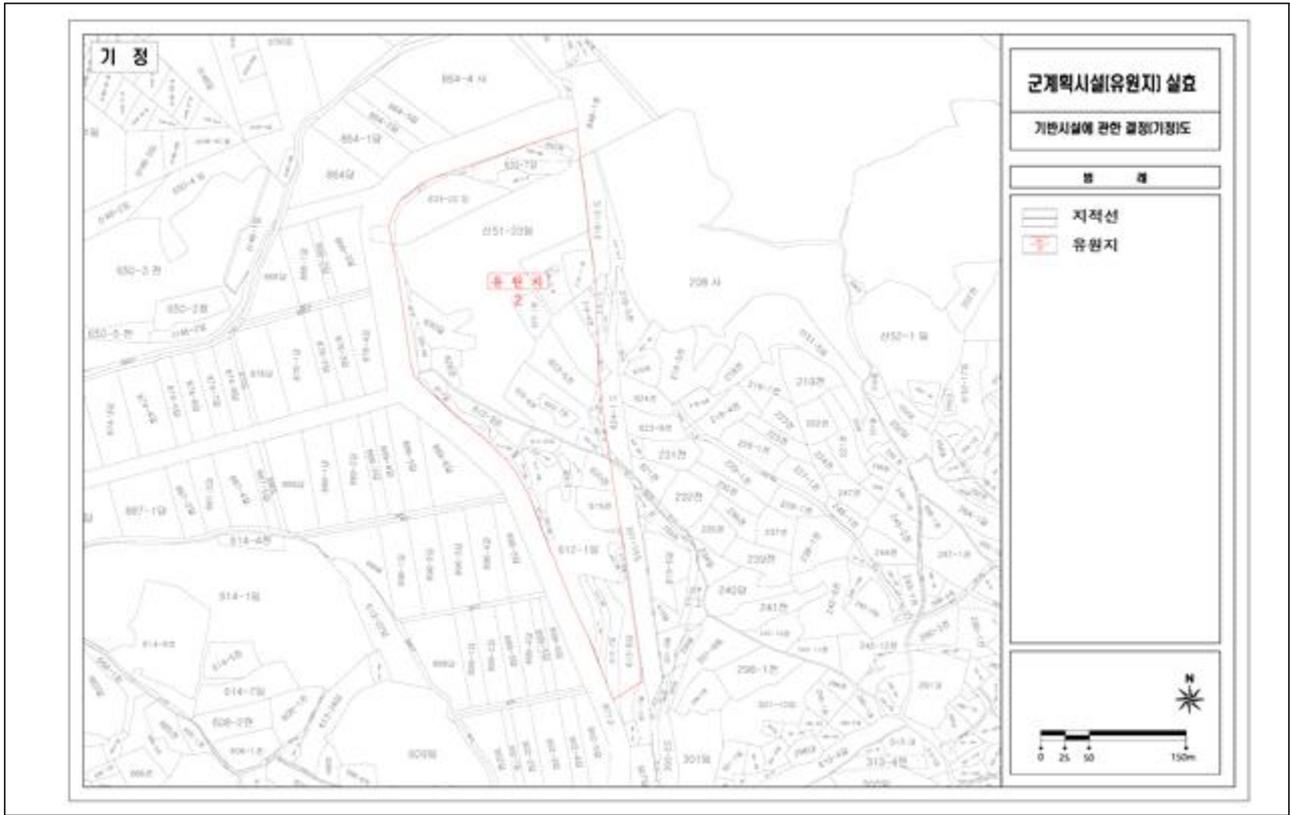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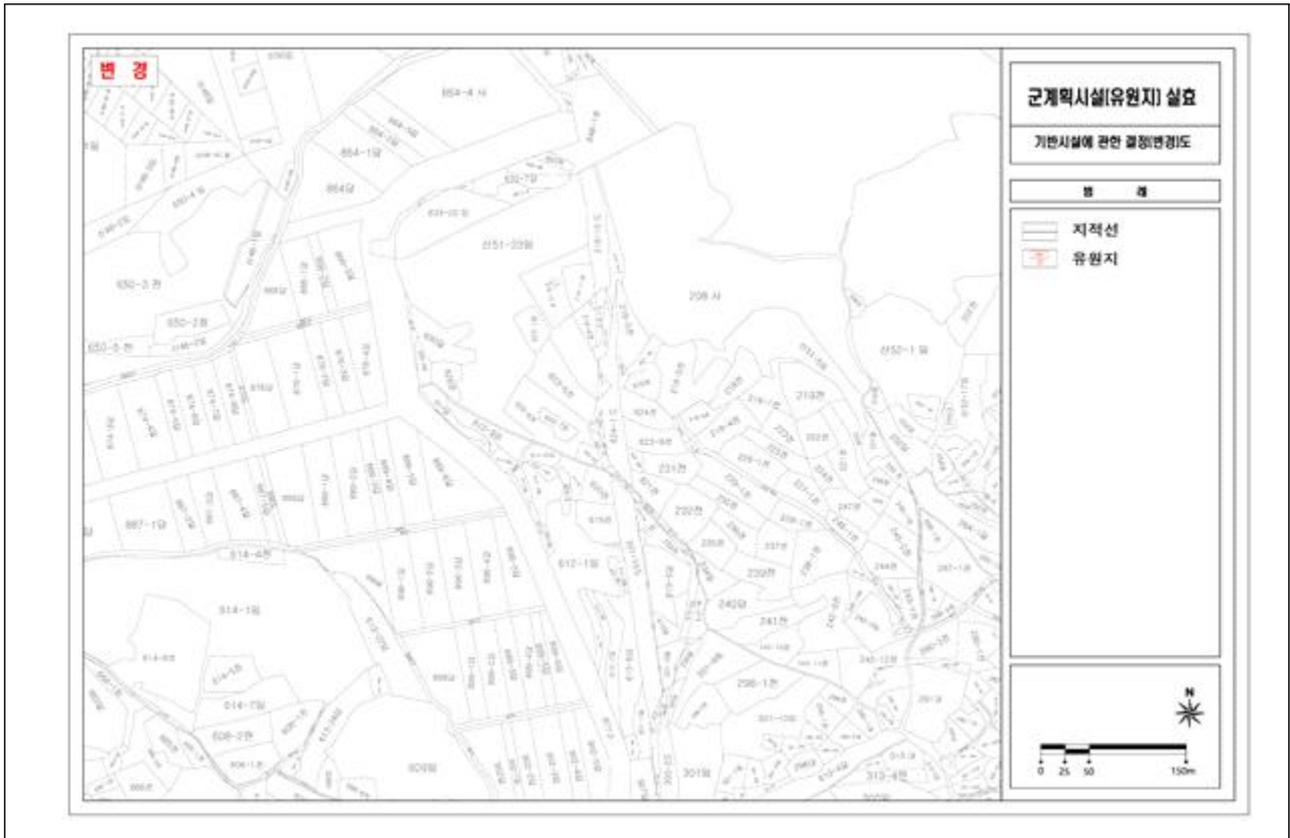


군계획시설(유원지) 결정 실효 지형도면고시

○ 기정



○ 변경



해남군 공고 제2023-1907호

해남군 군계획시설(하수도)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전 열람 공고

해남군 화원면 화봉리 429번지 일원에 해남군 군계획시설(하수도)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전 열람공고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도서를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23. 8. 3.

해남군수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해남군 화원면 화봉리 429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해남 군계획시설(하수도)사업
  - 명칭 :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조성사업
-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 사업시행자 : 해남군수
- 4. 사업시행기간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25년 12월 예정
- 5. 사업규모
  - 하수도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하수도	해남군 화원면 화봉리 429잡 일원	-	증)29,558.7	29,558.7	-	-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다음
- 7.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8. 관계 도서는 해남군청 상하수도사업소(☎061-531-3683), 화원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합계				55,040	29,558	-	-	-	-	-	
1	화봉	산29-1	임	21,206	619	한국 관광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디동)				
2	화봉	산29-4	임	1,322	1,322	한국 관광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디동)				
3	화봉	산29-2	도	298	124	한국 관광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디동)				
4	화봉	423-2	도	7	7	한국 관광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디동)				
5	화봉	746	도	1,515	115	한국 관광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디동)				
6	화봉	437-2	도	126	68	한국 관광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디동)				
7	화봉	437-1	전	174	10	한국 관광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디동)				
8	화봉	423-1	전	545	545	한국 관광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디동)				
9	화봉	424	대	423	385	한국 관광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디동)				
10	화봉	산29-5	임	545	545	한국 관광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디동)				
11	화봉	427	대	707	707	한국 관광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디동)				
12	화봉	425-1	답	195	107	한국 관광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디동)				
13	화봉	425-3	도	13	8	한국 관광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디동)				
14	화봉	426	전	681	681	한국 관광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디동)				
15	화봉	512-2	대	281	281	한국 관광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디동)				
16	화봉	433-1	답	1,170	1,025	한국 관광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디동)				
17	화봉	432	전	1,124	1,124	한국 관광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디동)				
18	화봉	431-2	답	688	688	한국 관광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디동)				
19	화봉	431-7	잡	205	166	한국 관광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디동)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20	화봉	431-1	답	268	221	한국 관광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디동)				
21	화봉	432-1	전	73	73	한국 관광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디동)				
22	화봉	431-4	답	393	314	한국 관광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디동)				
23	화봉	431-5	잡	688	679	한국 관광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디동)				
24	화봉	431-6	답	326	326	한국 관광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디동)				
25	화봉	산27-1	임	3,074	3,074	한국 관광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디동)				
26	화봉	429	전	2,843	2,843	한국 관광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디동)				
27	화봉	428	전	949	949	한국 관광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디동)				
28	화봉	산28-6	임	1,091	1,091	한국 관광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디동)				
29	화봉	429-3	전	1,557	884	한국 관광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디동)				
30	화봉	429-1	전	2,430	1,456	한국 관광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디동)				
31	화봉	429-7	전	152	152	한국 관광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디동)				
32	화봉	산27-5	임	2,578	2,578	한국 관광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디동)				
33	화봉	430-1	전	2,261	2,261	한국 관광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디동)				
34	화봉	430	전	631	631	한국 관광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디동)				
35	화봉	430-2	전	1,312	1,312	한국 관광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디동)				
36	화봉	430-3	대	397	397	한국 관광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디동)				
37	화봉	431-10	대	344	344	한국 관광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디동)				
38	화봉	431-3	답	1,287	1,114	한국 관광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디동)				
39	화봉	431-11	대	341	222	한국 관광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디동)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40	화봉	431-12	도	140	99	한국 관광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디동)				
41	화봉	431-8	도	680	11	한국 관광공사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디동)				

함평군 고시 제2023-73호

**함평 군관리계획(도로)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및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1071번지 일원에 함평군 고시 제2022-84호(2022. 9. 8.)로 결정·고시된 함평 군관리계획(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023. 8. 3.

**함평군수**

1. 함평 군관리계획(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 다음
2. 함평 군관리계획(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도면 : 게재생략
3. 함평 지형도면승인고시도면 : 게재생략
4. 함평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조서 : 다음
5. 관계도서는 함평군청 지역개발과(061-320-1583, 158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함평 군관리계획(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1. 군관리계획(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43	12	국지 도로	230	함평읍 기각리 1071도	함평읍 기각리 1071도	일반 도로		함평군 고시 제2022-84호 (2022.9.8.)	
변경	중로	3	43	12	국지 도로	230	함평읍 기각리 1071도	함평읍 기각리 1071도	일반 도로		함평군 고시 제2022-84호 (2022.9.8.)	

2)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3-43	중로3-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형 변경 - B=12m, L=230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계획 선형 반영을 위한 도로 선형 경미한 변경</li> </ul>

함평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조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107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함평 군계획시설(도로)사업
  - 나. 명 칭 : 함평군청~농어촌공사 간 도로 확장사업
3. 면적 또는 규모
  - 가. 면 적 : 3,581㎡
  - 나. 규 모 : 도로 2개소

구 분	기종점	기능	규모	
			시설결정	금회시행
중로2-9호선	기점 : 중로1-1호선 종점 : 중로2-1호선	보조 간선도로	연장 620m (폭원 18m)	연장 56m (폭원 18m)
중로3-43호선	기점 : 기각리 1071도 종점 : 기각리 1071도	국지도로	연장 230m (폭원 12m)	연장 230m (폭원 12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함평군수
  - 나. 주 소 :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나. 준공예정일 : 2025.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다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소유권 등의 조서

번호	행정구역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군	읍	리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지분	
합계				48필지		37,431	3,581						
1	함평	함평	함평	130-2	대	437	194	함평군					
2	함평	함평	함평	133-2	도	43	43	국토교통부					
3	함평	함평	함평	130	대	245	110	함평군					
4	함평	함평	함평	500	도	11,461	65	국토교통부					
5	함평	함평	기각	1071	도	19,763	1,506	국토교통부					
6	함평	함평	기각	1071-23	대	29	6	기획재정부					1071에서 분할
7	함평	함평	기각	807-1	대	118	63	함평군					
8	함평	함평	기각	807-2	대	101	101	함평군					807에서 분할
9	함평	함평	기각	807-3	대	11	11	황0학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남일길 96-31				807에서 분할
10	함평	함평	기각	806-1	도	7	7	함평군					
11	함평	함평	기각	805-1	도	20	20	함평군					
12	함평	함평	기각	804-1	도	10	10	함평군					
13	함평	함평	기각	804-2	대	162	2	함평군					
14	함평	함평	기각	803-1	도	3	3	김0익	함평리 56				
15	함평	함평	기각	803-2	대	149	3	함평군 외 7인		함평군		563/585	
										오0희	804	2/585	
										김0숙	804	2/585	
										김0중	804	6/585	
										김0숙	804	2/585	
										김0재	804	4/585	
										김0자	804	2/585	
										김0	804	4/585	
16	함평	함평	기각	802-4	대	123	8	함평군					
17	함평	함평	기각	802-6	대	11	11	함평군				802-4에서 분할	
18	함평	함평	기각	802-2	대	182	3	함평군					
19	함평	함평	기각	802-5	대	21	21	함평군				802-2에서 분할	
20	함평	함평	기각	802-1	도	26	26	함평군					
21	함평	함평	기각	801-2	대	963	2	함평군					

번호	행정구역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군	읍	리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지분	
22	함평	함평	기각	801-1	도	33	28	농림축산식품부					
23	함평	함평	기각	800-1	도	112	66	국토교통부					
24	함평	함평	기각	799-1	도	20	5	함평군					
25	함평	함평	기각	799-2	대	132	4	함평군					
26	함평	함평	기각	789-20	대	32	32	함평군					789-6에서 분할
27	함평	함평	기각	787-9	대	63	58	함평군					787-2에서 분할
28	함평	함평	기각	789-19	대	78	78	함평군					789-1에서 분할
29	함평	함평	기각	776-4	도	7	7	이0민	818				
30	함평	함평	기각	786-3	도	10	3	함평군					
31	함평	함평	기각	776-3	도	66	25	이0민	818				
32	함평	함평	기각	776-5	대	93	51	함평군					
33	함평	함평	기각	776-6	대	106	68	함평군					
34	함평	함평	기각	776-2	도	126	112	이0민	818				
35	함평	함평	기각	776-8	대	63	63	함평군					776-1에서 분할
36	함평	함평	기각	800-2	대	1,560	11	전라남도					
37	함평	함평	기각	775-6	대	104	104	함평군					775-2에서 분할
38	함평	함평	함평	124-13	대	173	60	함평군					
39	함평	함평	함평	124-10	대	21	21	함평군					
40	함평	함평	함평	124-9	대	35	35	함평군					
41	함평	함평	기각	775-5	대	39	39	함평군					775-1에서 분할
42	함평	함평	기각	795-1	대	59	59	함평군					
43	함평	함평	기각	798-1	대	216	39	함평군 외 2인		김0현	내교리 458-1	9/65	
										내0아	함평읍 기산길 20	13/65	
										함평군		43/65	
44	함평	함평	기각	795-5	대	64	64	함평군					795-2에서 분할
45	함평	함평	기각	795-3	도	10	10	이0룡	400				

번호	행정구역			지번	지목	면적(m <sup>2</sup> )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군	읍	리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지분	
46	함평	함평	기각	795-6	대	40	40	함평군					795-4에서 분할
47	함평	함평	기각	792-2	대	211	211	함평군					792에서 분할
48	함평	함평	기각	792-1	도	73	73	함평군					

※ 상기 편입토지상 지장물건 일체 포함

- 편입면적은 분할측량, 등록전환 등으로 인해 조정될 수 있으며, 편입토지 내 지장물 포함

함평군 고시 제2023-76호

함평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827-2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의거 함평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3. 8. 3.

함평군수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827-2번지 외 13필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함평 군계획시설(도로)사업
  - 나. 명 칭 : 함평 기각지구 서진 엘리체 아파트 신축을 위한 군계획시설(도로) 조성사업
-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가. 면 적 : 2,570㎡
  - 나. 규 모 : 도로 2개소

시 설 명	총 규모	금회시행	비 고
소로2-928	A=4,174㎡	A=1,345㎡	19.725
중로3-909	A=2,084㎡	A=1,225㎡	19.725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사업시행자 : 대선이앤씨 유한회사 대표 김광언
  - 나. 주 소 :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금성산성길 71
-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5. 6. 30.
- 6. 사업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
- 7.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지역개발과 도시계획팀(061-320-1588)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함평군 공고 제2023-923호

**함평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공사완료 공고**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산66-2번지 일원의 함평 베르힐C.C(대중제 27홀) 조성사업에 따른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완료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3. 8. 3.

**함평군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산66-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사업
  - 나. 명 칭: 함평 베르힐C.C(대중제 27홀) 조성사업
3. 사업시행면적 및 규모
  - 가. 면 적: 1,594,836.7㎡
  - 나. 규 모: 대중제 골프장 27홀
4. 사업시행자
  - 가. 성 명: 베르힐컨트리클럽(주) 대표이사 문금환
  - 나.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108번길4, 5층(신용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2021. 4. 23.~2023. 7. 18.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지역개발과(☎320-15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군 공고 제2023-925호

신안 군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 사전 열람 공고

천일염종합유통센터 진입도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압해읍 송공리 875-6번지 일원 신안 군 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내용을 사전 열람 및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8. 3.

신안군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875-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천일염 종합유통센터 진입도로(소로1-94호선) 개설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합계	도로	비고
개 소(노선수)	1	1	소로1-94호선
연 장(m)	130	130	-
면 적(㎡)	1,353.1	1,353.1	-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성 명 : 신안군수
  - 주 소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4.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 다음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8. 열람 기간 및 장소
  - 가 열람기간 : 2023. 8. 3. ~ 2023. 8. 17.(14일간)
  - 나 열람장소 : 신안군청 천일염지원과 및 신재생에너지과

※ 관계 도서는 신안군청 천일염지원과 및 신재생에너지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천일염지원과(☎240-8555) 및 신재생에너지과(☎240-84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권리자			비고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주소	성명	권리관계	
1	압해읍 송공리	875-6	잡	1,032	1,032	신안군	-	-	-	-	
2	압해읍 송공리	875-12	잡	321.1	321.1	신안군	-	-	-	-	
합계				1,353.1	1,353.1	-	-	-	-	-	

세계로 준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생명의땅 으뜸진남

발행인 전라남도 편집인 대변인 주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061-286-2073